

유신치하 언론탄압과 피해보상

유신청산민주연대 토론회(언론부문)

- 일시 : 2021년 11월 29일(월) 오후 2시
-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언론노조 회의실
- 주최 : 유신청산민주연대
- 주관 :  자유언론실천재단  전국언론노동조합

토론회 개요

유신치하 언론탄압과 피해보상

- 유신청산민주연대 토론회(언론부문) -

- 일 시 : 2021년 11월 29일(월) 오후 2시 ~ 5시
- 장 소 :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언론노조 회의실
- 주 최 : 유신청산민주연대
- 주 관 : 자유언론실천재단 · 전국언론노동조합

- 오프닝 :
 - [인사말]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 김재홍 유신청산민주연대 상임대표
 -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 사 회 : 이명재(전 뉴스통신진흥회 사무국장, 전 동아일보 기자)

- 발제(1) : 김서중(성공회대 교수 · 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공동대표)
1970년대 유신정권의 언론탄압과 언론인들의 저항, 피해보상
- 발제(2) : 고승우(언론사회학 박사 ·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공동대표)
5·18민주화운동과 1980년 언론투쟁

- 토론(1) : 김동현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부위원장)
- 토론(2) : 김준범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공동대표)
- 토론(3) : 송병춘 (변호사, 유신청산민주연대 법률기획위원장)
- 토론(4) : 구영식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기자협회 부회장)

토론회는 언론노조 유튜브 채널로 현장 생중계합니다.

| 인사말 |

김 재 홍

(유신청산민주연대 상임대표)

군사권위주의 정권 시기 언론탄압에 대한 피해보상과 명예회복을 논의하는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게 돼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회 주제는 유신청산의 여러 분야 중에서 언론이 대상입니다.

내년 2022년은 박정희가 유신헌법을 선포한지 50년이 되는 해입니다. 저희 유신청산민주연대는 ‘유신50년청산위원회’ 발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한국의 군사독재 정권은 유신체제 이전부터도 언론탄압을 가장 큰 통치수법으로 휘둘렀습니다. 1961년 12월 5.16쿠데타 정권은 민족일보 조용수 사장을 사법살인 했습니다. 또 1970년 정론 시사월간지 사상계를 폐간 조치했으며 그 발행인이던 장준하 선생은 75년 등산 중 의문사로 아직도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군사정권이 이른바 주류언론에 본격 탄압을 가하기 시작한 것은 정보공작정치로 절대 권력을 확립한 유신체제 이후였습니다. 1974년 10월 동아일보와 동아방송이 학생운동에 관해 보도한 것을 빌미로 중앙정보부는 편집국장과 담당 부장 등을 연행해 갔습니다. 이에 동아일보사의 기자, PD, 아나운서들이 10.24 자유언론실천선언을 발표했으며 중앙정보부는 동아일보사에 광고탄압을 공작했습니다.

1975년 2월 동아일보사는 자유언론 투쟁을 벌이던 직업언론인 113명을 해직시켰습니다. 동아일보의 자유언론 투쟁에 지지를 선언한 조선일보 기자 70여명도 해직당했습니다. 오늘 이 토론회를 함께 마련한 자유언론실천재단의 역사입니다.

1979년 12.12 군사반란으로 국가권력을 찬탈하고 유신 2기를 개막한 전두환 하나회 정권은 80년 5.18 광주시민항쟁을 보도하기 위해 자유언론 투쟁을 벌인 기자들을 강제 해직 시켰습니다. 언론탄압으로 박정희와 전두환 정권의 동질성을 확인시켜 준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80년해직언론인협회의 뿌리입니다.

저는 요즘 자유언론이란 말보다는 정론언론이 더 적합한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언론 자유는 만발했지만 “기레기 언론”이란 말이 알려주듯이 그 사회적 책임은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편집권 독립이란 말보다도 편집권 민주화가 더 타당합니다. 족벌사주로부터 임명받은 편집간부에게 독립이란 별 의미가 없으며 편집방향에 대해 기자들과 상시적으로 토의하는 편집권 민주화가 더 바람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토론회가 한국의 언론을 바로 세우는데 이정표로 역할하기 기대합니다.

1970년대 유신정권의 언론탄압과 언론인들의 저항, 피해보상

김 서 중

(성공회대 교수 · 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공동대표)

1. 유신체제 이전의 권력과 언론 - 통제의 배경과 그 방식

유신체제 언론통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신체제 이전 언론의 통제 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유신체제 언론통제는 사실 상 그 이전에 이루어진 언론통제 결과에 기반을 두고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즉 5·16 군사쿠데타에서 유신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정권은 언론기업화를 통해 경제적 통제에 약한 언론을 만들어 내고, 이러한 언론에 대해 경제적 성격의 통제 조치를 취했다.

1) 5·16 군사정권의 등장과 언론 통제

4·19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표현한 반독재투쟁이었다. 하지만 원조경제와 이에 따른 대미예속의 심화와 국내 경제의 파탄이 더 근본적인 원인이었음을

무시할 수 없다. 해방 후 자립적 성장을 해오던 중소기업들은 몰락하는 경제의 양극화 현상을 초래한다. 동시에 농촌의 몰락은 도시빈민이라는 기층 민중의 확대를 가져오고, 이들 민중의 불만이 야당과 학생, 지식인들로 대변되는 중산층 운동으로 폭발하여 4·19라는 혁명을 야기하였다고 볼 수 있다. 중산층은 기본 인식에서 자유당 정권과 다를 바 없었으나 권력에서 소외되었다는 사실이 불만을 야기하고 있다. 당시의 사회 환경 상 교육받은 지식계급은 증대하고 있었다.(김성환, 1985. 304-7쪽) 그럼에도 산업자본은 미성숙하여 고급 인력을 제대로 흡수할 수 없었고 따라서 흡수되지 않은 고등교육 수혜자들은 잠재적 비판세력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4·19의 배경을 오히려 5·16 군사쿠데타 세력은 경제건설과 정치적 안정이라는 쿠데타 명분으로 악용하였다. 군부 특히 소장파 장교들은 그들의 쿠데타를 합리화시켜주는 이념으로 사회 질서의 정립 즉 반공주의¹⁾와 경제제일주의를 내세웠다.(김남석, 1994. 69-72쪽 그리고 이를 완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작업은 대중을 새로운 이념에 적극 동원할 수 있도록 제반 사회적 조건을 형성시켜줄 수 있는 교육, 언론, 문화기구의 적극적 동원이었다. 또 미국 의존의 외자 도입 배분을 통한 경제 정책이 지니는 악순환과 이를 향한 불만을 잠재우는 것이 중요했다. 결국 정권은 체제 재생산의 중요한 수단인 언론을 장악하는 것이 필요했을 것이다. 이것이 언론에 대한 정부의 통제로 나타나는 것이다.

2) 정권의 경제적 통제 수단

5·16 군사정권은 체제 재생산의 한 수단으로 언론을 장악하고자 했다. 언론을 장악하는 방식은 정치적, 법적, 경제적, 사회적 등 다양한 방식이 가능하다. 1960년대 정부가 사용한 언론 통제 방식도 이 모든 다양한 방식을 다 포괄하였다. 1960년대를 규정하는 5·16 이후 정부의 언론통제는 1961년 5월 16일 신문에 대한 사전 검열로부터 시작되었다. 이어 5월 23일 국가재건최고회의 포고 제11호, 1962년 6월 28일 언론정책 25개항, 동년 7월 30일 언론정책시행기준, 1963년 12월 12일 공포된 ‘신문 통신 등의 등록에 관한 법률’, 1964년 8월 5일 공포된 ‘언론윤리위원회법’ 등으로 이어지는 언론 전반에 관한 법제적 통제가 추진되었다. 또 1961년 7월 3일 공포된 ‘반공법’은 직접 언론을 규제하고 있지는 않았으나 소위 고무찬양 조항을 가지고 있으므로 해서 언론을 통제할 수

1) 미국의 도움으로 체계화된 군사교육을 받은 소장파 장교들이 미국의 ‘이데올로기적 지원’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반공을 제1의 국시로 정한 것이 중요함을 재론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는 것이었다. 물론 이상의 법적 조치 이외에도 테러, 경제조치, 고소(명예훼손을 이유로) 등 다양한 방식이 동원되었다. 그 중에서 이전 정권과 달리 활용한 언론 통제의 수단이 경제적 통제였다.

흔히 당근과 채찍으로 비유되는 언론 통제 방식에서 경제적 성격의 통제는 당근에 해당한다. 경제적 성격의 조치들로 인해 배제되는 세력에게는 그렇지 않지만 생존하는 언론사에게는 막대한 경제적 특혜를 보장하는 것이기도 하다. 제1공화국 시절 언론이 정치적·경제적 요인에 의해 영세할 수 밖에 없었던 요인은 언론을 정파적 신문으로 자리매김 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경제적 성격의 통제는 항상 건전한 언론기업의 육성이라는 명분 아래 진행되었다.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서 허가제였던(미군정법령 88호와 공보부령 제1호가 계속 적용됨) 언론사 설립이 신고제로 바뀌면서(‘신문 등 및 정당 등의 등록에 관한 법률’을 1960년 7월 1일 법률 제553호로 공포함으로써) 언론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다. 군사정권은 이를 정비함으로써 체제 순응적인 언론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다²⁾. 그 첫 번째 조치가 1961년 5월 23일 발효한 포고령이다. 포고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관훈클럽, 1982, 781쪽)

1. 신문을 발행하려는 자는 신문제작에 소요되는 제반 인쇄시설을 완비한 자에 한함
2. 통신을 발행하려는 자는 통신발행에 필요한 송수신 시설을 구비하여야 함.
3. 등록사항을 위반한 정기 및 부정기 간행물은 이를 취소함
4. 신규등록은 당분간 접수치 않음

그리고 공보부령 1호를 통해 제작에 필요한 제반 인쇄시설은 자체 제작시설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이 조치들은 언론사 정비로 이어지고 이에 따라 <표 1>과 같이 대다수의 언론이 강제 폐간되고 일간지 39개사, 통신 11개사, 주간지 32개사 만이 살아남았다.

2) 물론 민주당 정권 시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사이비 언론들이 보여 준 행태는 전 사회적으로 불만을 야기할 정도였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5·16 군사정권의 대책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만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왜냐하면 단순히 건전 언론 육성을 위한 것이라면 사전 허가적인 시설기준을 이용하기 보다는, 일단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범법적인 행위에 대해 사후에 처벌하는 방식으로 처리했어야 하지 않았는가라는 점이다.

〈표 1〉 5·16 군사정부의 언론기관 일제정비 현황

1961년 5월 28 현재.

구분	일간신문		통신		주간지		합계		
	중앙	지방	중앙	지방	중앙	지방	중앙	지방	계
등록수	64	51	252	64	355	130	671	245	916
최소수	49	27	241	64	324	129	614	220	834
잔존수	15	24	11		31	1	57	25	82

특히 포고령의 첫째 항인 인쇄 시설 기준 요구가 중요한데 이 기준을 맞추는 것이 언론사에게 경영 상 부담으로 작용하고, 동시에 언론사 운영에서 경영이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토록 하는 것이었다. 최고회의 공보담당 강상욱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언론정책의 기본정신은 이른바 정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언론을 기업으로서 성립시키도록 육성하고 그 내용을 향상시키는데 있다”(주동황, 1993, 80쪽)고 밝힌 것처럼 언론의 기업화를 위한 조치들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상의 준(準) 법적 성격을 지닌 조치들은 ‘신문 및 통신 등의 등록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법률적으로 정비되었다. ‘신문 및 통신 등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서는 언론사의 설립을 위한 시설기준이 좀 더 차별적이고 구체적으로³⁾ 규정되었다.

그렇다면 이상의 조치들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첫째는 언론을 소수화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비판의 목소리를 줄이는 것이다. 일간지를 예로 들면 1960년대에 새로 생긴 중앙일간지는 중앙일보와 신아일보 밖에 없었으며, 지방일간지를 포함하여도 10개를 넘지 않았다. 둘째는 언론의 기업화를 통해 체제 순응적으로 변화시키자는 것이다.⁴⁾ 세째는 언론 내부에서 경영진의 이해관계를 극명하게 하자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경영의 이해와 언론 종사자의 이해가 대립하는 관계로 발전하도록 하는 것이다.⁵⁾ 1968년 신동아사태에서 동아일보가 관련자 뿐만 아니라 이사 주필 천관우를 비롯 신동아 주간 홍승면, 신동아 부장 손세일 등을 해임하고 동아일보의 발행인을 교체한다. 이는 1950년대에서는 보기 힘든 모습이었다. 이러한 언론 경영진의 태도는 1975년 동아조선 사태에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 났다고 할 것이다. 그 해직언론인 숫자에서 뿐만 아니라 언론경영진이 앞장서 언론종사자들을 직장으로부터 쫓아냈다는 사실은 언론의 성향이 변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3) 3도이상 지역에서 발행하는 일간신문, 2도인 경우, 1도인 경우로 세분화하고 있다.

4) 사실 1960년대 언론이 기업화하면서 언론에 대한 통제는 오히려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언론이 스스로 비판을 자제하는 보도경향을 보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정진석(1985)은 특히 언론윤리위원회법 파동이 있는 이후로 “5·16 직후부터 1964년 말까지는 자주 일어났던 필화사건과 이로 인한 언론인 구속사건이 줄어드는 반면, 기업에 대한 유형무형의 압력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 경영주들의 힘이 커지는 반면 기자는 쉐러리맨화 했다는 자조 섞인 넋두리가 나오게 된 것은 그보다 몇년 뒤의 일이지는 했지만 이때부터 그러한 변모는 시작되고 있었다”(305쪽)고 서술하였다.

5) 전술한 바와 같이 1950년대의 특징은 비록 정파적 성격을 지니기는 하였지만 언론 전체가 즉 경영진과 언론종사자들 사이에서 일치된 모습을 보였다는 점일 것이다.

이상의 조치들이 현실로서 등장한 이후 언론은 꾸준한 성장을 유지한다. 매출액의 경우를 예로 들면 중앙일간지들은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62년에서 1970년 사이에 연평균 35~45%의 성장율을 기록해 같은 기간에 국민총생산의 성장율과 제조업 성장율이 9.9%와 21.4%였던 것⁶⁾과 비교해 볼 때 매우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이다.(주동황, 1993. 100쪽)

〈표 2〉 1960년대 주요 중앙일간지의 매출액 증가추이

(단위: 백만원)

연도	62	63	64	65	66	67	68	69	70
동아	215 -	287 (33.4)	424 (47.9)	604 (42.4)	708 (17.3)	918 (29.6)	1,664 (54.2)	2,096 (26.0)	2,746 (31.0)
서울	74 -	97 (31.2)	123 (27.8)	160 (29.6)	236 (48.4)	338 (43.2)	521 (54.1)	588 (12.9)	923 (57.0)
중앙	- -	- -	- -	56 -	396 (607.1)	551 (39.1)	795 (44.3)	1,184 (48.9)	1,772 (49.7)

자료 : 동아일보사, 『동아일보사사』 권3 (1985), 524-525면

서울신문사, 『서울신문 40년사』 (1985), 780-781면

중앙일보사, 『중앙일보 20년사』 (1985), 1148면

* 동아일보의 경우 1967년까지는 결산일이 당해연도 6월 30일이며 1968년부터는 당해연도 12월 31일임

* 괄호는 전년대비 성장율(%)임.

결국 정부의 언론기업화 시도는 언론에 대한 경제적 통제인 동시에 살아남은 언론에게는 경제적 특혜로 작용했음을 무시할 수 없다. 이것은 결국 언론 현실에 자본의 이해가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언론윤리위원회법 파동 당시 유효하게 작동하였던 경제적 통제는 이후 한국 언론의 변화를 상징하는 것이었다. 이후 언론산업 내의 갈등(경영진과 일선기자 사이의)은 증폭되었다. 또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이 언론에 족쇄를 채우는 법률임에도 그 적용이 줄어들고 특히 신문보다는 잡지에 적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것은 언론이 체제 순응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6) 이 수치는 경제학적으로 볼 때 고도성장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음

2. 유신체제 언론 통제

1) 유신체제 성립과 긴급조치

그러나 1970년대 고도성장 단계에 들어서 국내 자본 시장의 규모가 확대되면서 시설 기준 조항이 자본가에게 갖는 진입장벽은 점점 낮아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⁷⁾ 그럼에도 신문산업에 새로이 진입한 경우가 전무한 것은 정치적 이유가 더 크게 작용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신문산업에 대한 새로운 진입이 전무한 과정에서 언론의 독과점화가 더욱 진행되면서 언론은 기업적으로 크게 성장하게 된다.⁸⁾ 이러한 조건은 1970년대 유신 정권 시기 언론을 암흑시기라고 부르는 기본 조건이 되었으며, 가혹한 정치적 통제를 수용하는 밑바탕이었다.

언론의 측면에서 보면 우선 언론은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1971. 12. 27)에 규정하고 있는 언론·출판에 관한 규제권에 따라 탄압을 받았으나,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사회전반이 반발하였던 것처럼 언론도 언론자유수호투쟁을 전개해 맞서 나간다. 그러나 유신체제가 출범하고는(1972년 12월 27일 유신헌법의 공포를 기점으로) 정부는 유신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긴급조치를 이용하여 언론을 적극 통제해 들어 간다. 그런데 이 시기는 유신헌법의 성격이 그러했던 만큼 정상적인 법에 의해 언론이 규제되었던 시기라고 볼 수는 없다. 1972년과 1973년 사이에 이루어졌던 언론 통폐합과정이 그러하다.(문종대, 1990, 209쪽) 또 긴급조치는 비상대권의 형태로서 수년간에 걸쳐서 적용되는 것 자체가 정상적인 법 운영 형태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유신체제에 굴복하고 언론자유수호투쟁 시 언론인을 탄압했던 언론의 경영진의 행태는 5·16군사정권이 언론 기업화 정책을 실시한 결과라 봐야 할 것이다.

유신정권이 언론을 통제하기 위해 사용한 다양한 방법 중 유신헌법과 이에 기반한 긴급조치의 발동은 유신정권의 언론 정책 기조를 이해하는 단초이다. 정진석은 유신헌법에

7) 김남석(1994)에서 김남석은 60년대에도 신문의 시장진입장벽은 그다지 높지 않았으며(89쪽), 70년대에 시장진입장벽이 높은 것도 (시설기준 조항 때문이기 보다는) 신문산업 자본의 고도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109쪽) 왜냐하면 당시의 시설기준이 신문산업으로 존재할 적정 산업규모 이상의 것은 아니었다(60년대)든가 신규참여 자본의 이익율이 산업평균의 이익률을 상회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김남석은 자본의 관점에서 경제적 효율성 만을 가지고 시장진입 장벽을 논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닌다. 언론은 일반 경제와 달리 수익율이 영(零)에 가깝더라도 진입하려 하는 욕구가 존재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시설 기준 조항이 갖는 경제적 의미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만이 개입 가능한 조건을 형성해주고 이를 통해 경제적 기업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에 있다. 시설기준 조항을 이윤율에 따른 자본의 흐름을 제한하는 시장진입장벽의 한 요인으로만 보아서는 안될 것이다.

8) 문종대(1990) 208쪽에서 문종대는 국가의 시장진입 규제와 더불어서 1971년에서 1973년 사이에 행해진 지방신문 기업의 폐간 및 통폐합이 독점시장을 확보해주는 중요한 기제로 작용했음을 지적하고 있다.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유신헌법은 이전까지는 명문화되어 있었던 언론의 허가제 불인정이라는 표현을 삭제하였고(제18조) 제32조의 법률에 의한 제한규정도 이전까지는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었으나 이 조항도 없어졌다는 것이다. 또 국가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도 있도록 규정(제32조 2항)하여 1970년대의 제4공화국 하에서는 언론의 자유가 크게 위축되었다고 평가하였다.(정진석, 1985, 57쪽) 즉 유신헌법은 언론통제를 할 수 있는 최고 상위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할 수 있었다.

이에 발 맞추어 유신헌정은 1975년 5월 23일 긴급조치 9호를 선포했다. 이 긴급조치 9호는 그 동안의 긴급조치를 총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김민환, 2002, 606쪽) 즉 유언비어의 날조와 유포, 학생들의 불법집회와 시위, 재산의 해외도피, 불법 해외이주, 공무원의 수뢰 및 회계 부조리 등을 엄단하고 유신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비방하고 개정 및 폐기를 주장 청원 선동하거나, 이를 보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고 그 위반자는 영장없이 체포하도록 했다. 5월 30일에는 언론기관의 긴급조치 위반여부를 심의할 보도심의위원회를 설치했다. 6월 19일에는 전파관리법을 개정하여 방송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무선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게 하였다.

1977년 8월 27일에는 긴급조치 9호에 저촉되는 11종의 출판물을 적발하여 배포 또는 판매를 금지했다. 같은 해 12월 9일 대검찰청 특별 수사부는 한국경제신문 등 5개 일간지를 각종 부조리 혐의로 수사하고 문공부에 한국경제신문, 종합신문, 전광산업신보의 폐간을 건의했다. 문공부는 12월 12일 한국경제신문에 긴급조치를 적용, 폐간시키고 군경민보 등 월간지 18조의 등록을 취소했다.

물론 긴급조치 9호 만이 언론통제에 사용되었던 긴급 조치는 아니었다. 그러나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발동에 의해 더 많은 언론 탄압이 자행되었고(유재천, 1991, 61쪽) 그 중에서도 긴급조치 9호가 본격적으로 언론통제를 위해 사용한 조치였다. 박정희 정권은 유신헌법 제53조에 따라 70년대에만 아홉 번의 긴급조치를 발동했으며 그 가운데 직접 언론의 자유를 크게 제약한 것은 긴급조치 제1호, 제2호(74. 1. 8 선포, 74. 8. 23 해제) 및 제9호(75. 5. 13 선포, 79. 12. 9 해제)였다. 긴급조치 1호와 2호는 일체의 개헌논의를 금지했으며, 위반자를 심판하기 위해 비상군법회의를 설치했다. 긴급조치 9호는 전술한 바와 같이 유언비어죄까지 규정하여 유신헌법에 관한 개정논의를 완전히 봉쇄했다.

이러한 조치들의 시도는 사실 매우 효과가 컸다. 1977년에 이르면 공개적으로 발행되는 『신문연감』에서 다음과 같은 글을 볼 수 있었다.

“한국신문은 금년(1976년) 들어 편집체계의 획일성과 기사 취급의 안이성으로 말미암

아 일부 독자로부터 간간이 비난을 받아 오고 있다. A신문에 난 기사 내용이 B신문에도 형용사 한 자 틀리지 않고 같은 내용이 나오는 경우가 때때로 있을 뿐 아니라, A신문에 4단 표제로 나온 제목이 B신문에도 4단 표제의 같은 제목으로 다음날 조간까지 변형없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획일적인 편집현상은 특히 정치적인 사건을 다룰 때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가령 명동사건). 서울 시내에서 발간되는 7개 일간지는 명동사건 공판 기사를 한결같이 2단 표제로 다루고 있다.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 하더라도 생각해 볼 문제인 것만은 부인할 수 없다.”(68쪽)

신문연감은 신문협회가 발행하는 것으로 정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을 실었다는 것은 당시 언론에 대한 대다수의 이해가 동일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해야 할 것이다.

2) 유신시대의 언론통제

유신시대에는 신문제도의 골간이 되는 신문법의 변화는 없었다. 그러나 다양한 기타 언론관련 법들이 언론제도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긴급조치법의 존재와 프레스카드제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었다.

유재천은 언론관련법의 제·개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유재천, 1991, 61쪽)

“유신체제 때에는 우리나라 언론사상 어느 시기보다도 언론관계법령이 가장 많이 제정 또는 개정된 시기였다. 새로 제정된 법령 가운데 언론조항이 삽입되어 있는 것들은 ①군사기밀보호법(72. 12. 26) ②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73. 8. 8) ③방송법 시행령(73. 3. 21) ④영화법(73. 2. 16) ⑤영화법시행령(73. 2. 17) ⑥광고우편취급규정(72. 10. 18) ⑦외국간행물 수입배포에 관한 법률(72. 2. 17) 등이고 개정된 법률로는 ①형법(75. 12. 31) ②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72. 12. 26) ③공연법(75. 12. 31) 등이다. 이러한 언론규제법들이 많이 제정된 것은 유신헌법에서 법률에 의해 언론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한 것이었다.(제18조, 제32조)”

이렇게 언론관련법을 많이 제·개정한 것은 당시 언론 통제를 허용하는 유신헌법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더불어서 이때는 강압적 통치체제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반발이 존재할 위험이 있었고 이를 억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통제와 저항, 통제 강화 등의 악순환의 반복이 이루어지던 시절이었다고 하겠다.

(1) 언론통폐합

독재정권들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항상 사용하던 통제 수단은 언론 통폐합을 통해 친정부언론 속에서 반정부언론을 숙아내는 것이며, 남아 있는 언론에 대해 경고를 하는 것이었다.

5·16 쿠데타 정권은 쿠데타를 성공시킨 직후 포고령 제11호를 공포하여 언론사 일제 정비를 실시하였다. 4개항으로 된 이 포고령에 따라 서울에서는 일간지 49개, 통신사 241개, 주간지 324개가 무더기로 등록취소 당했고, 지방에서도 일간지 27개, 통신 64개, 주간지 129개가 등록취소 당했다. 결국 정부 수립 후 최대의 일간신문 76개, 통신은 305개 사가 폐간당한 사건이었다.

정당성이 부족한 유신정권에 대한 사회 각계의 반발은 당연했고, 이를 옹기는 언론에 대해 유신 정권이 불편해했을 것도 당연하다. 그 실태를 보면 우선 1972년에는 대구일보(3. 30)와 대구경제일보(4.1)가 자진 폐간형식으로 문을 닫았고, 이어서 지방지의 통폐합 논의가 시작되었다. 1973년 들어서는 한국경제일보(3.28) 동화통신(3.31), 대한일보(5.15) 등이 차례로 폐간하였다. 이는 중앙지의 수를 줄이려는 정부의 의지가 관철된 것이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외견 상 명분은 자진 폐간 형식을 띠었다.

더 문제는 지방지의 통폐합 과정이다. 정부는 1도 1사 원칙이라는 주장을 앞세워 언론사 통폐합을 유도해나갔다. 대전에서는 대전일보가 중도일보를 합병하여 충남일보로 제호를 바꾸었고(1973. 5. 25), 6월 1일에는 전북의 전북일보와 전북매일, 호남일보가 통합하여 전북신문을 발족하였다. 9월 1일에는 경기일보와 경기매일, 연합신문이 경기신문으로 통합했다. 이는 정부가 지역독점체제를 구축해주고, 비판을 무디게 하는 정권의 의도가 담겨있는 것이었다.

이중에서도 경기일보와 경기매일, 연합신문이 경기신문으로 통합하는 과정은 당시 정부의 언론통제정책이 어떤 성격이었는지를 명백히 보여주는 사례이다. 일반적으로 통합이 이루어질 경우 1위 신문이 주도하는 통합을 예상하지만 사정은 그렇지 않았다. 기호신문이 1988년 회고한 바에 따르면, 수원에 기반을 두었던 연합신문의 홍대건 씨가 강력한 여권을 등에 업고 거대한 사옥과 시설을 갖춘 인천의 두 일간지를 흡수하여 연합신문이 주도하는 경기신문을 경기도의 단하나의 일간지로 만들었다. 이로써 인천에서 발행하는 지역신문은 없어졌다. 경기일보의 경영진과 기자들은 10년, 20년 몸담았던 직장을 잃고 해매게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사례는 이후 신군부에 의한 지방지 통합과정에서는 일반적인 경향으로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1위 신문이 아닌 사람에게 통합을 주도하

게 함으로써 그 혜택에 대한 보답을 친 정부적 성향으로 보여줄 것을 기대하고 이루어진 정책이었다.

이들 신문들 중 자진 폐간의 경우에는 세인들을 호도할 명분이 있었다. 대구일보의 경우 프레스카드제의 발급을 계기로 기자들로부터 금품을 거두어들인 사건이 있었고, 대한일보의 경우는 사장이 수재의연금 착복했다는 혐의로 구속 상태에 있었다. 하지만 우리나라 3대 통신사의 하나인 동화통신의 폐간이나 피쳐 독점 기사를 내보내던 AK 통신이 없어지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통폐합의 결과 1도 1사 주의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전국에 걸쳐 많은 지방지가 사라진 것은 틀림없다. 충남, 전북, 경기지방에는 1개씩의 일간지만 남았으며, 원래 1개씩의 일간지만이 존재하던 강원과 충북, 제주지방을 제외하면, 부산, 경북, 경남, 전남지방에서만은 2개씩의 일간지가 발행되어 1도 1사주의가 거의 이루어졌으며, 단지 14 개만이 남았다.

이러한 변화가 언론정책의 결과였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당시 윤주영 문공부장관의 발언은 의미가 있다. 장관은 국회 문공위원회 석상에서 “사원의 생계를 보장하지 못하는 언론사는 문을 닫아야 한다” 그리고 “경영부실의 지방지 통합은 환영할 만한 일이며 언론기관이 언론본래의 사명을 다하지 못할 때에는 통합 또는 중자를 통하여 이를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주동황, 1993)

〈표 3〉 1973년의 언론통폐합

매체명	시행일	내용	이유
한국경제일보	3. 28	폐간	경영난
동화통신	4. 30	폐간	재정난
대한일보	5. 15	폐간	일신상의 이유
대전일보	5. 25	2사 통합	충남일보로 개제
충도일보			
전북일보	6. 1	3사통합	전북일보로 개제
전북매일			
호남일보			
호남매일	5. 30	폐간	경영 상의 이유
AK뉴스	6. 30	폐간	불명
경기일보	9. 1	3사 통합	경기신문으로 개제
경기매일			
연합신문			

자료: 한국신문협회, 1982, 372-373쪽, 한국신문편집인협회, 96쪽

(2) 프레스카드제 도입

프레스 카드제의 도입은 명분 상으로는 사이비언론을 줄이고, 기자 임금의 현실화라고 하는 긍정적인 측면을 내세웠다. 1970년대 들어서서는 사이비 기자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가중되고, 기자의 임금체계에 대한 기자협회의 조사결과가 발표되는 등 압력이 거세지면서 정부는 각 언론사에 임금현실화를 실행할 것을 종용하였다. 이러한 기자임금 인상에 대한 압박과 동시에 1970년의 차관 도입에 의하여 기업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한국신문산업은 경영합리화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신문산업은 국가에서 실시한 프레스카드 발급을 기회로 <표 4>에서 보는 것처럼 1971년과 1972년 사이에 전체기자의 38%에 해당하는 1,920 명을 해고하였다. 결국 국가의 언론통제수단인 프레스 카드 발급은 한국신문산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었다⁹⁾.

하지만 이와 같은 정책은 신문기자의 자격, 취재의 자격을 정부가 마음대로 좌우한다는 것으로 이것은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가장 중대하고도 심각한 정책이었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기업화 과정을 통해 순치된 발행인들은 한마디 항의도 못하고 1971년 12월 17일 ‘언론자율에 관한 결정 사항’을 채택하여 자진해서 결의하는 형식으로 지지하였다.(송건호, 1990, 174쪽) 프레스카드제의 발급은 1973년 3월 7일 행정부 각처의 기자실을 줄이고, 출입기자를 줄이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출입기자대책’이라는 것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엄청난 조치가 가능했던 것은 당시 노동 조건의 취약성에 기반하였다. 당시 언론사들의 취업규칙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부분의 한국신문사는 회사 형편에 따라 노동자를 해직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고 한다.

정부의 간섭은 기자들의 자율적인 발행물이 기자협회보까지 이루어졌다. 1973년 7월 4일에는 그 동안 주간으로 발행해온 기자협회보를 문공부가 월간으로 발행하도록 조치했다. 이 회보는 1964년 11월 10일 월간으로 창간했으나 1968년 8월 3일 이후 주간으로 발행했는데 이를 환원조치한 것이다. 이러한 조치가 기자들의 발언 기회를 막고자 했음은 명백하다. 기존의 일간지의 경우 사주, 발행인의 협조 아래 일정한 통제가 가능했으나, 기자들의 자율조직인 기자협회까지 압력을 넣기는 곤란했으므로 아예 발언할 매체

9) 문종대(1990)는 198-9쪽에서 한편 7,090명에서 발급받은 3,975명과 카드를 발급받기로 하지 않은 주간, 월간지 기자 828명을 제외하면 2,287명이 프레스카드를 발급받지 못해 기자를 그만두었다는 주장(32.3%)을 했다. 과거의 수치가 이렇게 정확치 못한 것은 당시 통계가 정확하지 않은 측면도 있고, 통계의 기준을 어디에 두었는지의 문제일 수도 있다. 하지만 다수의 기자들이 프레스카드 도입에 따라 타의에 의해 그만 두는 상황이 발생했었다는 점은 달라질 수 없다.

자체의 발행주기를 길게 만든 것이다.

〈표 4〉 프레스카드 발급 전후의 기자현황

(단위: 명)

구분	1971년 10월 31일	1972년 12월 31일	감원
기자수	5,057 (100%)	3,137 (62%)	1,920 (38%)

한국기자협회, 『기자협회보』, 1973. 2. 9

(3) 보도지침과 언론보도의 변질

보도지침은 5공화국 시절 전두환 정권이 행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박정희 정권도 유신 시절 보도지침을 계속 전달하였다. 이는 미디어 오늘(1996. 1. 3)의 취재 결과 밝혀진 것인데, 긴급조치와 같은 초법적 권한을 행사하고 유신 정권도 언론사 장악이 유신 정권 정착의 관건이라는 것을 알고 내용 통제를 하기 시작했다. 미디어 오늘이 밝힌 바에 따르면 1975년 5월 16일부터 1979년 11월 20일까지 4년 6개월이라는 긴 기간에 걸쳐 중앙정보부가 주도하여 시행하였다.

장기적이 지속적이지 않더라도 유신 정권 시절에는 언론의 내용에 개입하는 사례들이 많았다. 1973년 10월 19일에는 당시 문공부 장관이었던 이원경이 각 신문사의 편집국장과 방송사의 보도국장을 불러 1) 데모·연좌·퇴학처분·휴강 등 학원내의 움직임을 당분간 일체 보도를 삼가고 2) 학생들이 거리로 뛰어 나왔을 때는 일단 정도로 작게 취급하며 3) 월남사태를 크게 하지 말고 4) 연탄 문제 등 사회불안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기사는 되도록 작게 취급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김언호, 1975. 80쪽)

위와 같은 간섭 만이 아니라 총체적인 통제들이 복합적으로 보도 내용에 영향을 미쳤겠지만 보도 내용에 대한 통제가 직접 보도 내용에 영향을 미쳤을 것임을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최종수의 연구에 따르면 신문들의 사설부터 비판적 성격은 소멸하였음을 증명하였다고 한다.(최종수, 1981. 335-7쪽)

1979년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를 대상으로 양지에 실린 사설을 내용분석한 바에 따르면

첫째, 해설형의 사설이 적어 조선일보의 경우 12.9%, 동아일보의 경우에 0.7%에 지나지 않았다.

둘째, 건의형 사설이 많아 조선일보 32.5%, 동아일보 30.7%였다.

셋째, 칭찬형 사설이 매우 많아 조선일보 36%, 동아일보 27.8%를 나타냈다.

넷째, 비판형 사설은 낮아서 조선일보 18.6%, 동아일보 33.6%를 나타냈다.

특히 정치 분야의 경우는 문제로 다루는 것조차 삼가서 조선 2건, 동아 5건에 불과했다고 한다.

김삼웅도 유신시대 언론에 실린 왜곡된 글들에 대해서 지적하였다. 그는 시기와 주제를 고려하여 곡필들은 18개로 분류하였다. ‘유신정변기의 곡필’, ‘유신헌법 지지, 찬양 곡필’, “유신만이 살 길이다.” 곡필, ‘유신대통령 선출 찬양 곡필’, ‘유신헌법의 곡필’, ‘긴급조치 찬양 곡필’, ‘유신헌법시대의 곡필’, ‘긴급조치 제9호 선포 때의 곡필’, ‘김옥선 사건, 3·1민주선언사건 관련 곡필’, ‘국민정치사상강좌 곡필’, ‘친일 어용언론인 학자 곡필’, ‘한민족의 국난극복사’ 곡필, ‘유신2기 대통령 당선 찬양 곡필’, ‘YH사태 관련 곡필’, ‘도시산업선교회 사건 곡필’, ‘신민당 의원들 의원직 사퇴 관련 곡필’, ‘부마사태 관련 곡필’, ‘10·26 사태 관련 곡필’ 등이 그것이다.(김삼웅. 1990)

그 중에서 주제가 언론과 관련 있을 만한 것으로 몇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신문발행인들을 대표하는 신문협회는 유신헌법이 통과하자

“... 이렇듯 긴박한 정세 속에서 자위태세의 강화와 함께 우리의 활로를 스스로 개척하고 민족의 지상과업인 조국의 평화통일 달성을 과감하게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국내체제의 유신적 개혁과 전국민 총화에 의한 굳은 민족의 단결이 필연적으로 요청되고 있다.

10월 유신은 이와 같은 명제에 대한 민족적 결단인 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27일 공고된 헌법개정안은 우리 국민이 국가의 진운과 시대적 사명을 다 같이 짊어지고 전전해야 할 선택된 길임을 확신, 우리 신문협회 회원 일동은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바이다.

... 새로운 이념, 새로운 의지로써 안정의 기저를 다시 다지고, 빛나는 번영을 지속시켜 우리의 역사 속에 약동하는 생명의 새로운 기원을 기록해야 한다.”

결국 언론인이 아닌 경영인들로 전락한 발행인들의 단체는 언론을 ‘새로운 역사’ 즉 유신의 도구로 전락시키겠다는 결의를 한 것이다. 이것은 당시 정부의 통제에 대해 발행인들이 얼마나 취약했는가를 보여주는 사례였다.

긴급조치 9호는 언론에 대한 통제를 직접 담고 있는 것이었다. 언론을 직접 통제하겠다는 조치에 대해서도 한국일보는 1975년 5월 17일 사설 「모두 한덩어리가 되자 - 긴급조치 9호는 안보위반 적전 결단」에서 “국가안전과 공공질서를 수호하기 위하여 지난 13일 선포된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는 지금 조용한 국민적 합의로써 순조로운 흡수와 활력작용이 번져가고 있다”고 건강부회하였다. 좀 더 옮기면 총화가 필요하다는 전제 아래 “긴급조치 제9호에 담긴 굵은 뼈대 즉 유언비어의 날조 유포와 헌법개폐의 주장, 학생의 정치활동 및 간여 행위, 재산의 해외도피, 해외 부정이주 또는 국외도피 행위 등을

금지시킨 것이나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수뢰, 국고 손실죄를 범한 자에 대한 엄중조치를 명시한 것은 쉽게 말하여 그 최선의 길을 어김없이 보장하려는 장치인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일반 범죄행위 항목에 삽입한 유언비어의 날조 유포 금지가 그 이후 1979년까지 언론의 목을 죄는 목줄이었음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미 유신정권에 의해 통제되었던 언론들은 오히려 이를 환영하였던 것이다.

그 외에도 어용 언론인이었던 선우휘의 곡필이 글이 워낙 쉽게 씌어진 관계로 많은 독자들을 유신에 동조하도록 끌어들이었다. 조선일보 1978년 7월 20일 자에 실렸던 「안 보이는 것과 들리지 않는 것을 알아차리는 통찰력」이라는 글이 대표적이다. 또 어용교수였던 이승헌의 유신이념 찬양 글도 빼 놓을 수 없다. 이승헌은 『민주공화당보』에 「유신이념의 구현과 80년대 한국적 민주주의의 내실화」라는 글을 쓴다. 이 글은 유신 찬양가에 불과했다. 특히 ‘문화 예술을 진흥시켜 한국르네상스를 시발케했다’는 표현은 그 극을 보여준 것이었다.

이들의 글은 곡필이지만 이러한 곡필이 나오게 된 배경은 정권의 언론탄압으로서 유신정권의 언론탄압 상황을 반증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4) 물리적 통제

언론에 대한 통제가 커지는 반면 이에 대한 저항도 작지 않았다. 그 저항을 억누르는 다양한 통제가 또 다시 사용되는 악순환이 있었던 시절이 유신 시절이다. 그 중에서도 물리력을 동원한 통제도 있었다. 정부는 취재 방해, 폭행, 구속 등으로 기자의 취재 과정을 방해하였다.

〈표 5〉 국가의 기자노동자의 노동과정 방해 현황

연도	임의동행	연행	폭행	취재방해	구속	기타
70		2		1		
71	1	17	7	35		
72	11	2			1	
73		2				
74		6	7	1	4	
75		2		1	2	
76-79		2	14			폭행은 79년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협회 20년』, 1982, 714-747쪽 재구성, 문종대, 1990, 203쪽 재인용

유신정권 아래에서 일어난 언론인에 대한 폭행의 주체는 주로 경찰이나 군인이었다. 폭행사건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1979년 8월 11일 기자 15명에 대한 폭행을 언급할 수 있는데, 이 집단폭행은 신민당사에서 농성 중이던 YH무역회사 여공들의 강제해산을 취재하던 기자 15명에게 경찰이 무차별 폭행을 가한 사건으로 기자들이 기자 신분을 밝혔는데도 경찰봉으로 머리를 후려치고 카메라와 필름을 빼앗은 사건이었다. 기타 사건도 불법적인 성격을 띠기는 마찬가지였다.

1974년 접어들어서는 유신정권에 의한 언론인 연행사건이 빈번해졌다. 합동통신의 기자가 지방의 병무행정에 관한 내용을 기사화한 혐의로 구속되었고, 중앙일보 기자가 5월 3일 박영복에 관한 부정대부사건을 보도했다가 구속되었으며,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경향, 동아, 조선, 동아방송 기자들이 여러 번 연행되어 조사를 받았고, 이 사건을 풍자한 시사 만화를 게재한 만화가도 연행되어 조사를 받았다. 1974년 9월에는 특권 상류층 여성들 다수가 보석 밀수에 관련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 또한 국가안보라는 명분 때문에 기사화 되지 못했다.

유신정권의 개입은 심지어 기자 협회장 선거에 대해서도 이루어졌다. 1974년 9월 한국기자협회장 선거가 있었는데 서울의 각 신문사 발행인들이 서울 소재 기자들은 출마를 못하도록 결의하여 사장과 기자들 사이의 갈등이 불거지기도 하였다.

언론에 대한 사찰도 수시로 이루어졌다. 아니 일상화했다. 기관원이 상주하다시피 할 정도로 출입하였다. 기관원들은 감시하기 위해 출입하면서 직접 내용에 간섭하여 기사를 바꾸기도 하였다. 동아일보 기자들이 언론자유실천운동을 펴면서 기관원들의 출입을 금지하는 방을 써붙이기도 했던 것은 그런 이유였다. 이들의 출입은 기자들의 자유언론실천 운동의 촉발제가 된 셈이었다.

물론 한때 기관원 출입을 금지시킨 적이 있다.(송건호, 1990. 176-7쪽) 1973년 전국 기자들이 벌였던 언론자유수호운동에 대응하여 문공부는 언론기관에 정보기관원 출입을 금지토록 하였다. 하지만 이 조치를 취하면서 ① 유신체제에 대한 비판 ②안보의 중대사항 ③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사 등을 보도기관이 잘 알아서 판단하도록 경고하였다.

게다가 언론인에 대한 정권의 탄압을 국내 언론에만 한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당시 정권의 성격을 판단할 수도 있다. 정권은 외신기자들의 경우도, 1973년 8월에는 일본 요미우리 신문지국을 폐쇄하고 특파원을 추방하였다. 이어 1974년에 2월 4일에는 아사히 신문의 국내수입허가도 취소하였다. 이리하여 외국신문은 갈레조각처럼 가위질되어 국내에 배포되었는데 이것은 모두 박정권의 종신집권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기사들이었다.

3. 언론인의 저항

1) 유신 전후 언론 통제와 언론자유 수호투쟁

1970년 대 초반 언론인들이 벌였던 언론민주화운동은 유신정권의 폭압적인 통제로 제 역할을 못하는 신문들에 대한 일반인 특히 대학생들의 비판을 계기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선거가 치러졌던 1967년부터는 ‘기관원¹⁰⁾’들이 무상출입하면서 노골적으로 제작에 간섭하기 시작했고, 소위 ‘협조 요청’이라는 전화 통화로 기사의 단수가 줄어들거나 아예 기사가 송두리째 빠지는 일이 비일비재했으며, 기자나 편집 간부들이 자기 검열을 하는 경우도 드문 일이 아니었다고 한다.(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2005. 69쪽)

이러한 현실에 저항하지 못하는 언론인들에 대해 학생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1969년 9월 3일 연세대 총학생회가 “언론인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통해 언론인의 양심, 지성, 용기를 촉구하였고, 1971년 3월 24일에는 서울대 법대 학생총회가 언론화형식을 거행하고, 25일에는 문리대 학생총회에서 “언론인에게 보내는 경고장”을 채택했다. 이어 26일에는 서울대 문리대, 법대, 상대의 학생회장단 30여 명이 동아일보사 앞에서 “언론인에게 보내는 공개장”, “언론화형선언문”, “언론인에게 고한다” 등의 유인물을 행인들에게 나누어주면서 이를 낭독하다가 경찰에 의해 해산되었다. 이 사건은 장성규 법대 부회장 등 학생 4명이 연행되면서 10여 분만에 끝났지만 언론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이 이후에도 학생들의 비판은 다른 학교로 확산되며 이어졌다.(동아일보 노동조합. 1989. 22~25쪽)

학생들의 비판이 이어지자 동아일보 심재택, 이종대, 전만길, 권근술, 김종철, 박종만, 김용정 등 4년 차 이하의 기자들이 주도하여 1971년 4월 15일 김상만 사장 등의 만류에도 “언론자유수호선언”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인식을 같이 한 동아일보 선배기자 즉 송건호 논설위원, 김중배 사회부장 등도 합류했다.(동아일보사노동조합. 1989. 25쪽) 이들의 움직임은 서울 소재 신문방송사들은 물론 각 지역 신문방송사들에게까지 번져나갔다.(김민남 외. 1993. 355쪽) 16일 한국일보에 이어, 17일 조선일보, 대한일보, 중앙일보 기자들도 비슷한 내용으로 선언문을 채택했고, 중앙일보 기자들은 선언문을 대통령, 중

10) 중앙정보부만이 아니라 경찰 심지어 보안사나 정보사 같은 군 수사기관 기관원들도 출입을 하였다.

양정보부장 등에게 발송하기도 했다. 이 선언 투쟁에는 5월 초까지 중앙의 7개 일간지(동아, 조선, 한국, 중앙, 대한, 경향, 신아)와 1개 민간방송(문화방송), 2개의 경제지(현대경제, 산업경제), 2개 통신사(합동, 동화) 그리고 지방의 경남매일, 국제신보 등이 합류했다. 5월 15일에는 한국기자협회가 자유언론수호 행동강령과 결의문을 채택하였다.(동아일보노동조합. 1989. 26쪽) 하지만 1971년의 투쟁은 1회성으로 그쳤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조직적인 투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시위를 이유로 1971년 10월 15일 서울 일원에 위수령을 내리는 등 탄압을 강화하던 박정희 정권은 언론 탄압도 강화하였다. 그 첫째가 1971년 12월 17일 신문협회가 자율적 결의 형식으로 실시한 프레스카드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박정희 정권이 주도한 것으로 기자 수를 억제하고, 기자 신분을 정부가 인증하는 언론통제 제도였다. 프레스카드제 실시로 일간지의 경우 본사는 2,564명 중 242명, 주재기자는 1,676명 중 925명이 프레스카드를 발급받지 못했다. 이를 계기로 언론사는 대대적인 감원을 실시했다. 이어 박정희 정권은 1972년 3월 7일 정부출입기자대책'을 발표하고, 행정부처 기자실 47개를 18개로, 출입기자 790명을 465명으로 제한하였다. 1971년 12월 27일에는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과 국론 분열 및 사회질서 혼란의 위험이 있는 사항에 관한 언론 출판을 규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통과시켰다.(김민환. 2002. 492~496쪽) 당시 언론은 비상계엄으로 내용 통제를 받은 것은 물론 일상적인 취재활동까지 제한 받았다. 방송은 뉴스만이 아니라 오락 프로그램도 간섭하였고, 찬송가까지도 금지곡 딱지를 붙이기도 하였다.(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2005. 74~76쪽)

강화되는 언론 탄압에 반발하여 1973년에도 언론민주화운동이 이어졌다. 1973년 3월 동아일보사에서 연판장 사건이 발생하였다. 안성열, 조학래, 우승용, 이종대 등 정치부 기자가 중심이 되어 독자적인 편집권 행사와 신문지면 쇄신을 주장하는 연판장을 돌렸던 것이다. 회사측 방해에도 불구하고 기자 70%가 참여 하였으며, 기자들을 의식화하고 조직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2005. 77-78쪽) 10월 19일에는 경향신문사의 젊은 기자들이 외부압력 배제, 사실 보도 충실, 인사 쇄신, 급료 인상 등을 요구하였고, 10월 23일에는 전체 기자 모임 ‘소공회’가 결의문을 채택했다. 한국일보사의 기자들도 11월 7, 19, 20일 등 여러 차례 철야 모임을 갖고 기사 누락에 대해 항의하였으며, 22일에는 “언론자유 확립 결의문”을 채택했다. 11월 20일에는 동아일보사 기자들이 “언론자유수호 제2선언”을 채택했다. 그 외에도 기독교방송국, 조선일보, 문화방송, 중앙일보, 신아일보 등에서 언론자유수호 결의문을 채택했다. 중앙일보사의 부·차장 31명이 언론자유를 수호하지 못한 것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사표를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유신정권은 오히려 11월 중순부터 “국내외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을 인식

하고 유신체제나 안보에 위해 되는 기사는 신지 않기로 한다”는 이른바 ‘자율방침’을 마련해 발행인들의 서명 작업을 종용했다. 이에 대응하여 동아일보사 언론인들은 12월 3일 “언론자유 수호 제3 선언문”을 채택했다.(박지동, 2000, 371~383쪽)

이러한 언론자유 수호투쟁은, 유신체제 출범 1년여 만에 본격화한 대학생들 비롯한 각 계 각층의 저항, 함석헌, 장준하, 계훈제 등의 재야인사 30여 명에 의한 1973년 12월 24일 ‘헌법개정청원운동본부’ 결성과 ‘1백만 인 서명 운동’ 등으로 이어지는 저항운동과 맥락을 같이 한다.(박지동, 2000, 379~380쪽)

하지만 언론민주화운동들은 그 의의에도 불구하고 전술한 바와 같이 조직적이지 못하고 일회적이어서 그 성과가 미약했다. 1974년 2월 동아일보사 경영진이 언론자유수호투쟁에 앞장섰던 몇몇 기자를 일반직으로 발령내자 젊은 기자들이 이에 반발하기 시작하였고, 이들은 반발 수단 중의 하나로 지속적인 운동이 가능한 언론노동조합 건설을 시도하였다. 그런데 유신정권은 합법적으로 보장된 언론노동조합 설립을 각종 편법을 이용하여 방해하였다. 이러한 방해물리치고, 1974년 3월 6일 동아일보 기자 33명이 전국출판노동조합¹¹⁾ 동아일보사지부 창립총회를 열었다. 규약(운영세칙)과 사업계획서 등을 채택하고, 조학래 기자를 지부장으로 하는 임원 및 집행기구를 구성하는 한편, 7일 오전 서울시에 노조 설립신고를 마쳤다. 33인이 발기한 출판노조는 곧 196명으로 늘어났다.(동아일보노동조합, 1989, 42~45쪽)

동아일보사 경영진들은 노조와의 양립은 불가하다며 노조 간부 13명을 해임했다. 하지만 탄압은 이렇게 내부에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해임된 노조 간부들이 당시 동아일보 사장 김상만을 상대로 해고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 민사지법에 내고 투쟁하고 있는 동안, 노조 설립신고 처리를 미루고 있던 서울시는 1974년 4월 5일 “노조의 임원 전원이 현재 동아일보사에 재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명분으로 접수 30일 만에 신고서류를 지부장 앞으로 반송하였다. 그리고 이 신고서가 반려되자 동아일보사 경영진은 노조 결성을 하지 말라는 요구조건을 내걸고 해직기자들을 복직시켰다.(박지동, 2000, 385~388쪽) 그리고 당시 해고무효 소송과 노조설립신고 반려에 대한 소송에서 사법부가 보인 행태 역시 서울시와 동일했다. 정권의 의도를 경영진, 서울시, 사법부 등이 공유했다고 할 수 있다. 즉 총체적 탄압의 시기였던 셈이다.

11) 당시의 전국출판노동조합은 출판에만 해당하는 노조가 아니라 사실 상 범 언론노조라고 할 수 있었다. 그들의 규약에 보면 “본 조합은 조합의 선언, 강령, 규약을 찬동하는 전국의 인쇄, 출판, 신문, 방송, TV, 예술, 연예, 특수인쇄, 제책, 지물가공 등 각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로서 가입 절차를 필한 자로 조직한다”(5조, 조직)고 되어 있었다.

2) 자유언론실천선언 운동과 동아일보 광고탄압

(1) 자유언론 실천운동

박정희 정권은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힘으로 국민에게 유신체제를 강요하는 한편, 언론에 대한 통제도 더욱 강화했다. 박 정권의 위기가 더욱 심화되어 이미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통제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1974년 1월 초 긴급조치 1, 2호를 발동하여 개헌 논의를 완전히 금지하고, 이어 4월 3일 긴급조치 4호를 발동하여 수많은 학생, 종교인, 지식인들을 ‘민청학련’ 사건으로 투옥시켰다. 1974년 2학기에 접어들면서 대학에서는 수많은 학생들이 다시 민주회복을 외치면서 정치범 석방, 고문자 처벌 등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언론인들도 이에 호응하여 언론민주화운동을 다시 시작하였다.

한국기자협회(기협) 동아일보분회는 1974년 10월 24일을 거사일로 잡고 준비 작업을 진행했다. 이 와중에 10월 23일 중앙정보부는 『동아일보』에 보도된 서울대 농대생 데모 기사와 관련해 송건호 편집국장과 박중길 방송뉴스부장, 한우석 지방부장 등 3명을 연행해갔고 이에 항의하기 위해 기자들은 연행된 회사 간부들이 돌아올 때까지 철야 농성으로 저항했다.(김언호, 1987. 292쪽) 10월 24일 오전 9시 15분 기자협회 동아일보분회는 ‘자유언론실천 선언대회’ 개시를 선포했다.(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2005. 115~116쪽) 이날 대회에는 동아일보사 편집국, 출판국, 방송국 소속 기자 180여 명이 참석했다. 선언의 핵심은 언론자유는 스스로 획득하는 것이므로 실천을 통해 확보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동아일보 기자들의 자유언론실천선언은 곧 전국의 신문 방송 통신 기자들의 자유언론실천선언으로 번졌다.(강준만, 1998. 235쪽) 하지만 동아일보 기자들의 실천은 이익 추구하고 탄압에 익숙해진 경영진의 반대에 부딪혔다. 기자들과 회사 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기자들의 제작 거부로 11월 22일자가 휴간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그동안 금기시됐던 개헌문제가 사설로 등장하는 등 지면이 쇄신되어갔다. 기자협회 동아일보분회는 ‘자유언론실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중앙정보부의 보도지침을 무시하였으며, 그동안 관성화된 제작방식을 변경하려 노력하였다. 그리고 외부의 지시에 의해 기사가 바뀌거나 축소되는지 등을 감시했다. 문제가 발생하면 『알림』이라는 소식지를 통해 기자들에게 알렸다.(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1987. 38쪽)

동아방송 PD, 아나운서, 기술직, 업무직 직원들도 자유언론실천에 동참하였다. 이들은 ‘동아방송자유언론실행총회’를 개최하고, 실행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이들은 외부세력의

탄압에 굴하지 않고 진실보도를 하겠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이후 실행위원회는 부정기 소식지를 발행하였다. 우선 「알림」이라는 이름으로 세 차례 내고, 『SPOT』라는 제목으로 바꾸어 14차례 발행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외부 간접 배제와 편성·제작의 자율권을 주장했다.

동아방송에서는 1월 28일 “정계야화” 중 4·18 고려대 시위학생들이 정치폭력배에게 테러 당하는 부분이 나가고 난 후, “정계야화”의 재방송을 편성에서 삭제한다는 지시가 내려졌다. 이에 프로듀서들은 퇴근하지 않고 철야농성하면서 토론과 협의를 거듭하였다. 협의 결과에 따라 결국 2월 2일 8시 30분에 테이프를 송출기에 걸었다. 이 사안을 기점으로 동아일보는 주조정실 폐쇄 → 오류동 송신소 제작 및 보도 관련 직원 접근 금지 → 송신소에서 임시 테이프 방송 → 직원 무더기 무기 정직, 해직의 순서를 밟았다.(김학천, 2007)

(2) 광고 탄압과 국민의 언론민주화운동의 확산

박정희 정권은 계속되는 탄압에도 동아일보 기자·PD들이 언론자유 수호투쟁을 벌이고 제작 거부 등과 같은 방법으로 저항하자, 동아일보사 경영진을 압박하기 시작하였다. 박정희 정권은 광고주들을 압박하여 1974년 12월 16일부터 『동아일보』 광고를 중단시켰다. 박정희 정권 들어 기업으로서 규모가 성장한 신문사들은 광고 재원 의존도가 80%에 달했는데, 이로 인해 광고 중단과 같은 탄압은 경영진을 압박할 수 있는 가장 유효한 수단이 되었다. 광고탄압이 본격화한 지 한 달 만인 1975년 1월 25일 현재 『동아일보』는 광고가 점차 감소하여 평상시 상품 광고의 98%가 떨어져 나갔다는 동아일보 관계자들의 주장도 있지만(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2005, 145쪽) 광고의 개수나 광고액은 명확한 자료가 없다. 단지 객관적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광고 지면의 변화를 보면 1974년 12월 1일부터 광고 중단이 있기 전인 12월 19일까지 일반 상품광고가 차지하는 지면이 36% 정도였는데, 12월 20일부터 30일까지는 30.2%, 1975년 1월 13.9%, 2월 9.6%, 3월 6.3%, 4월 6.2%, 5월 4.8%, 6월 4.2% 그리고 7월의 경우 광고 중단이 끝나기 전인 16일까지 3.7%로 격감하였음을 알 수 있다¹²⁾.

동아일보 광고탄압이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국내외 비판 여론이 들끓기 시작하였다. 원로 언론인 홍종인은 1974년 12월 19일 동아일보사를 찾아가 후배 언론인들을 격려하고, 그 날짜 『동아일보』 2판 1면에 광고를 냈다. 개인 이름으로 낸 첫 번째 광고였다.

12) 동아일보 기자 대량 해직이 발생한 3월 17일 이후에도 광고 중단은 지속되어 7월 17일이 되어서야 예전으로 돌아 갈 수 있었다.

이 광고의 위쪽엔 동아일보사 광고국장 김인호 명의로 대광고주들의 광고 중단 사실과 개인·사회단체의 의견·격려 광고를 부탁하는 내용의 사고(社告)성 광고를 내보냈다.(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2005. 159쪽)

하지만 12월 20일부터 동아일보 광고 해약이 본격화되었다. 12월 20일 4시경 한일약품의 광고 담당 책임자가 동아일보사로 찾아와 이유를 분명히 밝히지 않은 채 광고 동판을 회수해 갔다. 같은 날 오후 6시 30분경에는 대한생명보험 중역 한 사람이 찾아와 “1974년 연말까지 실리기로 예정돼 있던 12월 치 미계재분에 대해서는 금전적 불이익을 감수할 용의도 있으니 더 이상 광고를 게재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그로부터 나흘 뒤인 12월 24일 무더기 광고해약 사태가 일어났다. 럭키그룹, 롯데그룹, 오리엔트시계, 미도파백화점, 일동제약, 종근당제약, 한국바이엘, 태평양화학 등 10여개 대광고주가 일제히 광고 계약을 취소했다. 25일부터는 극장 광고도 일제히 끊겼다.(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2000. 31쪽) 동아일보사 기자들은 12월 25일 오전 편집국에서 긴급 총회를 열었다. 편집 간부들도 자리를 함께 한 이날 총회에서 기자들은 자유언론 실천의지를 다짐하고, 회사 측에 “광고 계약의 전면적 철회 경위를 즉각 신문과 방송에 자세히 보도하고, 철회된 광고면을 백지 그대로 제작할 것”을 건의했다. 하지만 회사는 자제할 것을 요구하고 거절하였다.

1974년 말부터 각계각층의 성명서와 결의문이 쏟아져 나왔다. 한국기자협회는 광고란이 사실상 백지상태가 된 1974년 12월 20일자 신문이 발행되자 회장단 및 언론자유특별대책위원회를 긴급 소집, 광고해약 압력을 통한 경제폭력을 비난하고 투쟁을 결의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하였다. 야당인 신민당은 12월 26일 긴급 당직자회의를 열어 광고탄압에 대한 대책을 협의하였다. 당직자회의는 『동아일보』 광고주들에 대한 광고해약 압력은 새로운 수법의 언론탄압이라고 규정하고, 사태의 진상을 조사 규명하기 위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정부가 언론탄압을 중지하라는 국내외 여론을 교묘히 벗어나기 위해 광고주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음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국회 문공위원회 소집을 요구기로 했다. 12월 27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광고해약이 정부의 압력 탓이며 범국민적 구독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같은 날 자유실천문인협의회는 ‘광고해약은 언론자유 실천에 대한 지능적인 봉쇄로 해소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민주수호국민협의회는 모든 국민이 동아일보의 자유언론실천 투쟁을 지원하자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는 12월 28일 격려 광고를 호소하는 내용을 포함한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성명서 및 결의문 발표는 1975년에도 계속 이어졌다.

1975년 새해로 접어들면서 성금 기탁, 독자 확장, 구독료 선납과 같은 ‘동아돕기 운동’은 신문에 자유언론운동을 격려하고, 민주주의와 인권 회복, 사회정의 실현을 촉구하

는 내용의 개인 의견을 신는 격려광고 형태로 바뀌었다. 신년호 『동아일보』 4면엔 “본란은 동아일보 사원의 언론자유 수호를 지지하는 광고입니다”라는 설명문과 함께 “언론자유 수호 격려”라는 1단짜리 컷이 달린 본격적인 격려광고란이 처음으로 등장했다. 신년 연휴가 끝난 뒤 처음 발행된 1월 4일자 신문은 8면 전체를 “암흑 속의 횃불”이라는 제목이 붙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의 의견을 신는 격려광고에 할애했다. 이 의견광고에는 원주교구 지학순 주교의 양심선언을 비롯해, 1974년 7월부터 1975년 1월 3일까지 열린 64차례의 인권회복기도회에서 발표된 결의문, 메시지, 선언문 등의 요지가 수록되었다.

광고탄압으로 고통받고 있는 동아일보를 지원하기 위한 시민의 활동도 한층 조직화한 형태로 나타났다. 민주회복국민회의 상임대표 윤형중(신부)은 1월 10일 동아일보 광고를 해약한 기업의 제품에 대한 불매원칙을 결의했다. 한국기자협회는 1월 11일 또 다시 동아일보에 대한 유신헌정의 경제폭력 중지와 3,000여 기협 회원의 연대적 저항운동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동아일보 기자들이 처절한 사투를 벌이고 있는 동안에도 다른 신문, 방송들은 이를 외면했다. 동아일보에 대한 광고탄압 사태가 발생하자 대구의 매일신문과 부산의 국제신보를 제외한 대부분의 신문들은 “일부 신문에 대한 광고 해약”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지면 한 구석에 1단으로 처리했다. 이러한 제작태도는 각 신문 발행인들이 언론인과 인식을 달리하는 것에서 기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김언호, 1987. 332쪽) 반면 조선일보를 비롯한 각 신문사 기자들은 경영진의 비겁한 자세에 항의하면서 잇달아 결의문, 선언문을 발표했다. 조선일보사 편집국, 출판국 기자들은 13일 광고해약 사태를 비난하고, 자유언론 수호를 주장하는 내용의 4개 항으로 이루어진 결의문을 채택했다. 중앙매스컴과 한국일보 기자들도 잇따라 선언문, 결의문을 발표했으며, 국제신문, 매일신문, 충청일보, 영남일보, 대구문화방송, 기협 전북도지부 등도 동아일보 기자들과의 공동투쟁을 다짐하는 비슷한 내용의 선언문,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런 와중에도 침묵을 지켜오던 한국신문편집인협회마저 1월 15일 모임을 가진 뒤, 10·24선언 이후 일선 기자들에 의해 진행되어온 언론자유 수호투쟁을 당연하고도 순수한 것으로 평가하고, 동아일보에 대한 광고탄압을 즉각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당시에 격려 광고를 내는 것은 물질적인 것을 떠나서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정권의 탄압이 있었기 때문이다. 광고를 신청하러 동아일보사로 향하던 가톨릭노동청년회의 남녀 직원이 사무실을 나오자마자 모 기관원에 의해 여직원이 연행되었고, 이 때문에 남직원이 문안만을 가져와 광고 게재를 요청하였다. 한편 익명으로 국민의 백지 광고가 쇄도하자 중앙정보부 등에서는 익명 광고를 낸 사람을 색출하려 노력했다. ‘육군 중위’라는

이름으로 격려광고가 게재되기도 했는데, 육군보안사령부는 1975년 1월 14일 밤 광고국장 등 3명의 사원을 연행했다. 동아일보 사원들은 이에 항의, 이들이 회사로 돌아 올 때까지 농성하기로 결의하고, 15일 밤부터 400여 명의 사원들이 철야농성에 들어갔다. 기자들은 이날 정오 긴급총회를 열어 보안사의 불법 연행에 엄중 항의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고, 이 날짜 신문 1면에 4단짜리 기사로 이를 보도했다. 또 『동아일보』 1975년 1월 25일자는 모 대학교수의 격려 광고에 대해 교수의 이름을 밝히려는 요구를 받았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고, 해약사태의 주체를 밝히면 이름을 밝히겠다고 하였다.(동아일보 노동조합. 1989. 94~95쪽)

3) 동아일보 기자 해고와 이에 대한 저항

광고 탄압과 이에 대한 저항이 점점 거세지는 와중에 동아일보는 1975년 2월 28일 오전 11시 제49회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임원진을 개편했다. 주총은 일부 사원들의 사규 문란행동을 주시하여 사내의 질서와 기강을 확립할 것, 경영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경영을 합리화할 것 등을 결의했다. 새로 선임된 주필 이동욱은 취임 인사말을 통해 “회사 내 무허가 집회와 유인물 배포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인사규정과 복무규정을 개정해 근무시간 내외를 막론하고 회사의 허가 없는 사내 집회를 금지시켰다. 회사 측의 이러한 움직임은 자유언론실천특위와 방송실행 총회의 활동을 겨냥한 것이었다. 그리고 1975년 3월 8일 느닷없이 경영난을 이유로 기구 축소를 단행하여 심의실, 기획부, 과학부, 출판부를 없애고 사원 18명을 전격 해임했다. 해임된 기자들 중에는 자유언론투쟁의 핵심 역할을 해온 기자 안성열과 동아일보사노조지부장 조학래 등이 들어있었다. 동아일보 기협분회는 해임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오히려 회사 측은 3월 10일 기자 장윤희와 박지동 2명을 추가로 해고했다.

이에 맞서 동아일보 기자들은 해임된 기자들을 즉각 복직시킬 것 등을 요구하며 제작거부에 들어갔다. 회사 측은 기자들의 제작거부 농성으로 신문 제작이 불가능해지자 타 신문사의 인쇄시설을 빌려 신문을 제작했다. 경영진은 같은 날 새로 분회장에 취임한 기자 권영자와 더불어 17명을 무더기 해임하는 것으로 제작거부에 응답했다. 이에 항의하여 150여 명의 사원들이 3층 편집국과 4층 방송국에서 농성했고, 특히 23명의 기자들은 2층 공무국을 점거한 채 자유언론 압살과 무더기 해임에 항의하여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동아일보 기자들은 3월 12일자 “자유언론실천 백서”에서 정권이 언론계 이간질을 통해 탄압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해임된 선배·동료 20명을 원상복귀시킬 것을 정부

와 경영진에게 요구했다. 동시에 이 문건에서 역시 언론자유 수호투쟁을 이유로 조선일보사가 취한 2명 해임, 16명 파면, 37명 무기정직 등의 조치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농성이 시작되는 날부터 재야, 성직자, 문인, 정치지도자, 교수, 학생 등 많은 민주인사들이 위로 방문하여 격려하고, 동아일보사 경영진에게 무더기 해임을 즉시 철회하고 동아일보 및 동아방송을 정상화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14일 농성장을 찾아 격려한 박형규, 홍성우, 백기완, 공덕귀, 이태영 등과 직접 참석하지 못하고 격려와 성명서 발표를 위임한 윤보선·함석헌·천관우·김대중 등은 “동아 사태에 대한 우리의 호소”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3월 15일 편집국장 송건호는 기자들을 무더기 해임한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송건호는 김상만 사장에게 해임사원 전원 복직을 건의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발생할 위험에 대해 경고했다.

농성 열새째인 3월 17일 새벽 3시경 2층 공무국으로 일단의 인물들이 용접기를 이용해 뚫고 들어와 폭력을 사용하며 농성자들을 강제로 끌어내었으며, 이 과정에서 기자 정연주 등 5명이 부상을 당했다. 제작거부 사원들은 18일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동아투위)를 구성하고, 기자 권영자(전 기협 분회장, 문화부 차장)를 위원장으로 추대했다. 동아투위는 우선 매일 아침 출근시간에 맞춰 동아일보사 앞에 모여 항의 시위를 벌이는 한편, 권력과 야합한 동아일보사의 배신·기만극과 박정희 독재정권의 악랄한 언론 탄압 및 한국 언론의 반민주적 행태를 고발하는 데 전력하기로 결의했다. 3월 17일 새벽까지 제작거부 농성에 동참한 기자, 프로듀서, 아나운서 등은 모두 165명에 이르렀다. 회사 측은 제작거부 사원이 ‘일부 극소수’라고 허위 선전했지만, 사실은 신문 방송 잡지 실무 제작진의 절반이 넘는 숫자가 제작거부에 동참하다 쫓겨났던 것이다.

동아일보사는 제작거부 사원들이 강제 축출된 뒤에도 회사 밖에서 계속 투쟁하자 3월 27일 또 다시 12명을 해임하고 7명을 무기정직 처분했다. 징계 받은 당사자에게 한 마디 사전 통고도 없이 사내 게시판에조차 공고하지 않은 채 전격적으로 취한 조치였다. 회사 측은 동아투위에 남아 투쟁을 계속할 사람과 회사로 복귀할 사람의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나자 4월 11일 또다시 기자·프로듀서·아나운서 등 75명에게 무기정직 처분을 내렸다. 이로써 3월 8일 이후 이날까지 동아일보사로부터 해직 또는 무기정직 처분을 받은 사람은 모두 132명에 이르게 되었다.

동아투위는 동아일보사에서 강제로 축출된 후 3개월 동안 김상만 사장 앞으로 서신도 보내고 여러 경로를 통해 대화를 시도했으나, 이 같은 노력이 무위로 돌아가자 법률적인 해결을 시도하였다. 김재관 등 121명의 사원들이 1975년 6월 21일 동아일보사 대표이사 김상만을 상대로 ‘해임 및 무기정직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서울 민사지법에 냈다. 소송의 청구 요지는 헌법 제28조(국민 근로의 권리)와 근로기준법 제27조 1항(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을 위배했다는 것이었다. 서울변호사회와 서울제일변호사회에서 선정한 김제형, 김춘봉, 이일재, 황인철 변호사가 무료 변론을 했다.

1975년 8월 19일에 시작한 1심 재판은 1976년 7월 12일이 되어서야 선고공판이 열렸다. 거의 1년 가까이 진행된 것이다. 선고공판에서는 김병익, 박지동, 서권석, 임부섭 등 5명이 승소하였으나, 김재관 등 나머지 64명은 기각 판결을 받았다. 1심 판결이 부분 승소이기는 하지만 동아투위는 그때까지 내세웠던 자유언론실천투쟁의 정당성이 공인된 것으로 보고 승소한 기자 5명의 회사 복귀를 촉구하는 한편, 기각 판결을 받은 나머지 직원들의 항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1978년 1월 9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1심의 일부 승소 판결을 뒤엎고 동아투위 위원 62명에 대해 전원 패소 판결을 내렸다. 동아투위는 “지금까지 내세웠던 자유언론 실천활동이 이미 1심 판결에서 그 정당성이 공인되었음을 기정사실로 인정한다”면서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 민사부(재판장 임향준, 판사 주재황, 양병호, 나길조)는 1979년 1월 30일 “이유없다”고 전원 기각했다. 이로써 이 소송은 3년 7개월 만에 부당하게 해고당한 동아투위 위원들의 패소로 끝났다.

4) 조선일보 기자들의 언론민주화운동

조선일보 기자들도 각종 언론자유수호선언에 동참하였지만, 그러한 노력은 결실을 거두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동아일보 기자들의 자유언론실천투쟁이 벌어졌다. 이에 조선일보 기자들도 편집국 내에 ‘언론자유 수호 특별대책위원회’를 만들었다. ‘언론자유 수호 특별대책위원회’는 지면을 검토하여 필요한 뉴스 게재를 요구하고, 탈락할 경우 그 경위를 독자에게 알리자는 결의를 다졌다.(조선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1993. 116쪽)

반면 조선일보사는 1974년 12월 18일 ‘편집권 침해’를 이유로 기협 부회장인 외신부 기자 백기범과 문화부 기자 신흥범을 전격적으로 해임했다. 그 이유는 두 기자가 17일자 4면에 실린 유정희 소속 의원 전재구의 이름으로 나간 “허점을 보이지 말자” 제하의 기사가 외부 청탁에 의해 실렸으며, 특히 결론 부분은 현 사회를 일방적인 입장에서 보고 있으므로 부당하다는 뜻을 편집국장에게 전달하였는데, 이러한 것은 편집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것이었다. 조선일보사는 1974년 12월 17일 오후 편집국장을 통해 회사 징계회의에서 결정한 견책을 통고하였고, 이들이 거부하자 18일 해임하였다.

백기범 기자와 신흥범 기자가 해고된 다음날인 12월 19일 편집국 기자 100여 명은 정태기, 주돈식, 강인원, 최규영 등의 주도로 편집국에서 비상총회를 열고, “백기범 신흥

범 양기자의 해임은 10·24 언론자유수호선언과 이에 따른 자유언론 실천운동에 대한 억압”이라고 주장하며 해임 철회를 요구하며 농성을 전개했다. 농성 다음날인 12월 20일 새벽 2시 사측을 대표하여 편집부국장 김윤환이 기자 대표들과 협상을 벌인 끝에 직접 문안을 작성하였다. “두 사람을 3개월 안에 복직시키겠다”고 공약하고, “만약 이 공약이 실현되지 않으면 편집부 국장 3인이 인책, 총사퇴 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기자들은 농성을 해제했다. 하지만 백기범, 신흥범 두 기자의 복직시한이 임박하자 사측은 복직 약속을 부인했다. 이에 대해 기협 조선일보 분회 집행부는 1975년 3월 6일 기자총회를 개최하여 10·24선언에 따라 투쟁한다는 내용의 제1선언문과 결의문을 채택하고, 두 기자의 즉각 복직 등을 요구하며 신문 제작을 거부하고 농성에 돌입했다. 이에 대해 방우영 사장은 “제작 거부를 계속할 경우 전원 파면시킬 것이며, 부·차장들만으로 신문을 제작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기자들이 제작 거부에 들어가자 부·차장들은 다른 신문을 베끼는 작업을 하였고, 기자들은 부·차장들에게 각성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문을 띄웠다.

농성 이틀째인 7일 회사 측은 기협 분회장 정태기를 비롯한 집행부 5명 전원을 파면했다. 기자들은 8일 김명규를 분회장으로 하는 제1차 임시분회 집행부를 구성하였다. 임시집행부는 “조선일보의 지령은 1975년 3월 7일로 정지되었음을 선언한다”는 내용을 담은 제2선언문을 발표하고, “① 7명 기자의 부당 해임을 즉각 철회하라 ② 조선일보는 경영자의 신문이 아니며 오로지 민족과 민주 시민의 신문임을 거듭 확인한다 ③ 우리는 현 편집국장단의 인책 사퇴와 정론지의 복귀 등 우리들의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계속 투쟁할 것을 다짐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박지동, 2000, 426쪽)

전화선이 끊기고 정문에는 바리케이드가 쳐지고 수십 명으로 증원된 낮선 경비원들에 의해 폐쇄된 채 기자들은 편집국에서 농성을 계속하였다. 농성 6일째인 11일 낮 12시 편집국 부·차장으로는 처음으로 정치부 차장 이종구가 농성에 합류했다. 이종구는 해임된 12명의 기자가 복직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밝히고, 신문 제작에 참여했다는 논공에 따라 호혜적인 처우를 받을 생각은 없다고 선언했다. 회사 측은 이종구의 농성 참여를 구실로 이날 낮 1시 이종구를 비롯하여, 박범진, 최장학, 유장홍 등 4명의 기자를 다시 파면하였다. 이로써 조선일보사는 11일까지 16명을 파면하고, 37명에게 무기정직의 징계를 내렸다. 경영진은 인사 조치를 발표한 뒤, 11일 오후 7시 30분 편집국에서 농성 중이던 기자들을 완력으로 끌어냈다. 12일 오전 기자들은 회사 정문 앞에 모이려고 했지만 경찰의 제지로 실패했다. 이후 21일 ‘조선일보 자유언론투쟁위원회’(조선투위)를 결성하였다. 한편 조선일보사는 4월 4일 또 다시 18명을 파면 조치했다. 이후 조선투위는 동아투위와 연대하여 언론자유수호투쟁위원회를 결성한 후 지속적인 언론민주화운동을 펼쳤다.

조선일보사 경영진이 동아일보 기자들이 자유언론 수호선언, 실천선언을 할 때마다 은

근히 2등은 해야 한다고 자사 기자들을 부추겼다는 증언도 있다.(조선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1993. 138~140쪽) 그런 조선일보사가 정부의 동아일보사에 대한 탄압이 심해지자 기자들을 해직하는 등 직접 탄압에 나섰는데, 이러한 점은 조선일보사 경영진이 이미 언론 본연의 기능보다는 경영을 중심으로 사고하는 존재가 되었음을 보여준다.

동아일보사와 조선일보사에서 기자들이 대량 해직 당하고 난 뒤, 제도언론에서 언론민주화운동이 전혀 일어나지 않은 것은 아니다. 1978년 6월 7일 중앙매스컴(중앙일보와 동양방송) 사원 일동은 삼성그룹으로부터의 경영 독립, 협업 중심 체제 구축, 인사고과제도 철폐, 부당 해임 사원 복직, 급여 현실화 등을 포함한 7개 항으로 구성된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무기한 투쟁을 선포한 이 운동은 중앙매스컴 경영진으로부터 전면적으로 수락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마무리 되었다.(박지동, 2000. 461~462쪽) 경향신문사에서도 1974년 경향신문사와 MBC가 통합된 이후 입사한 기자들이 1979년 ‘통합동지회’를 만들고 비밀 모임을 운영하였는데, 1979년 6월 19일 모임의 대표이던 고영재 기자가 『경향신문』의 왜곡된 논조를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고정란 ‘경향의 눈’ 중 “선진 농업 한국 발돋움한다”¹³⁾라는 제목의 컬럼의 왜곡된 논조를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경향인에게 고함”이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낭독하고 농성을 하였다. 통합동지회 기자들은 9월 12일에도 직무정지 가처분을 당한 신민당 김영삼 총재의 호칭을 즉각 김씨로 바꾼 것에 항의하는 농성을 하였다. 이 농성을 통해서 편집국장으로부터 공정보도에 대한 약속은 얻어냈지만, 당시 중심에 있던 기자 고영재, 박우정, 표완수가 편집국 밖으로 인사조치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언론민주화운동은 유신 말기에 발생하였으며, 대다수 언론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일회성으로 끝난 측면이 있다. 따라서 동아·조선 사태 이후 한국 언론은 암흑기에 들어갔다고 할 수 있다. 1960년대 후반부터 강화되었던 기관원들의 활동이 없어도 신문들의 기사는 ‘보도지침’에 의해 획일적으로 변하고 있었다. 따라서 언론이 아닌 다른 수단이 언론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은 불가피했다. 그 한 축에 해직된 재야 언론들과 출판의 역할이 있었다.

13) 고영재는 당시 조선일보가 농정 실패를 다루는 ‘흔들리는 한국 농정’이라는 특집 기사를 연재하고 있었을 정도로 농촌이 붕괴되고 있음은 명확한데 농촌이 발전하고 있다는 내용의 컬럼을 게재한 것은 명백히 현실 왜곡이며, 이 기사에 대한 친여지의 반격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5) 긴급조치 하 해직기자의 저항

유신시기를 긴급조치 시기라고 한다. 그 중에서도 긴급조치 9호는 유신시기 언론 통제의 핵심 기제였다. 유신정권은 1975년 5월 23일 긴급조치 9호를 선포했다. 이 긴급조치 9호는 그 동안의 긴급조치를 총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김민환, 2002, 606쪽) 즉 긴급조치 9호는 유언비어 날조와 유포, 학생들의 불법집회와 시위, 재산 해외도피, 불법 해외이주, 공무원의 수뢰 및 회계 부조리 등을 엄단하고, 유신헌법을 부정·반대·왜곡·비방하고 개정 및 폐기를 주장·청원·선동하거나 이를 보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고, 그 위반자는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했다. 5월 30일에는 언론기관의 긴급조치 위반 여부를 심의할 보도심의위원회를 설치했으며, 6월 19일에는 방송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무선국 허가를 취소할 수 있게 전파관리법을 개정하였다.

긴급조치 9호는 언론뿐만 아니라 출판까지도 통제했다. 1977년 8월 27일 긴급조치 9호에 저촉되는 11종의 출판물을 적발하여 배포 또는 판매를 금지했다. 같은 해 12월 9일 대검찰청 특별수사부는 『한국경제신문』 등 5개 일간지를 각종 부조리 혐의로 수사하고, 문공부에 『한국경제신문』, 『종합신문』, 『전광산업신보』를 폐간시킬 것을 건의했다. 문공부는 12월 12일 『한국경제신문』에 긴급조치를 적용, 폐간시키고, 『군경민보』 등 월간지 18종의 등록을 취소했다.

긴급조치에 따른 언론통제가 강화되는 동안 동아투위와 조선투위는 70년대 후반 이후 한국의 자유언론투쟁의 선도역할을 해왔다. 동아·조선 양 투위는 두 회사가 막강한 신문 지면과 동아방송의 전파력을 이용하여 양 투위를 ‘일부 극소수 난동분자’ 또는 ‘민족의 적’으로 몰아붙이고 사태를 왜곡 선전하는 것에 대해, 자신들의 주장과 사태의 진상이 담긴 유인물을 제작하여 종교계와 지식인 사회에 배포했다. 동아투위는 강제 축출당한 뒤, 유신체제가 끝날 때까지 모두 17명이 구속됐고 7명이 구류처분을 받았으며 80여 명이 중앙정보부 등 수사기관에 연행돼 조사를 받는 등 지속적인 탄압을 받으면서도 민주인권일지와 『동아투위 소식』지를 작성·배포하는 등 언론민주화운동을 지속했다.

먼저 동아투위 수난사 가운데 가장 큰 사건인 민주인권일지 사건에 대해 살펴보자. 1978년에 들어서면서 동아투위는 성명서를 발표하여, 당시 한국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사건들, 즉 일련의 대학생 시위사건, 동일방직 사건, 수많은 양심범 투옥 등을 제도언론이 보도하지 않고 묵살해 버리는 것은 그 자체가 범죄이며, 민중의 기대를 배반하는 것이라고 제도언론을 비판했다. 그리고 진정한 민주 민족 언론은 이를 알려야 하며, 재야 언론인인 자신들은 진정한 민주 민족 언론인으로서 언론자유와 사실 보도의 권리를 갖고

있다고 선언하면서, 자유언론을 압살하는 모든 제도와 법은 당연히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¹⁴⁾(『동아투위 소식』 1978년 1월 1일자) 동아투위는 이러한 주장을 실천에 옮기는 작업의 일환으로 『10·24 4주년 특집』을 작성하여, 1978년 10월 24일 명동 한일회관에서 개최된 ‘10·24 자유언론실천선언 4주년 기념식장’에서 배포하였다. 특집에는 “진정한 민주 민족언론의 좌표”와 “보도되지 않은 민주인권사건일지(1977년 10월~1978년 10월)”가 포함되어 있었다. “보도되지 않은 민주인권사건일지”에는 1978년 10월 당시 지난 1년간 제도언론에서 전혀 보도하지 않았거나 보도했더라도 집권층의 의견을 홍보하거나 체제를 비호하는 등 왜곡 보도한 사건들, 특히 전국 각 대학의 학생운동, 종교계, 노동자, 그리고 여러 민권단체의 인권운동 등과 관련한 125여 건이 기록되어 있었다.(민주언론운동협의회, 1988. 29-30쪽) “진정한 민주 민족언론의 좌표”는 ‘자유언론을 압살하는 모든 제도와 법을 철폐하라는 주장을 담은 글이었다.

경찰은 이날 이 두 기사가 긴급조치 9호를 위반했다고 하여 총무 홍종민을 연행하였다. 이틀 뒤에는 위원장 안종필과 안성렬, 박종만 등을 연행하였다. 그리고 이에 항의하여 언론탄압에 저항할 것을 호소하는 “현역 언론인에게 보내는 글”을 발표했다는 이유로, 30일 위원장 대리 장윤희, 총무대리 이기중, 그리고 이규만, 임채정, 정연주, 김종철 등을 연행하였다. 연행된 위원 중 안종필, 장윤희, 안성렬, 홍종민, 박종만, 김종철 등 6명이 11월 10일 구속되었다. 나머지는 불구속 입건되었다.

이듬해인 1979년 1월 9일에는 『동아투위 소식』 1978년 송년특집호에 민주인권일지 사건과 관련하여 ‘구속기소된 일곱 동지의 기소내용’이라는 기사에 공소사실을 게재한 것이 또 문제되어 위원장대리 윤활식, 총무대리 이기중 및 성유보가 연행되어 모두 구속되었다.(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2000. 66쪽) 이 사건의 변호에는 인권변호사 22인이 참여하여 변론하였으나, 대법원은 10명의 위원 중 안종필 등 8명에게 징역 1~2년 자격정지 1~2년을, 위원장대리 윤활식에게 징역 10월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위원 이기중에게 징역1년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경찰은 『동아투위 소식』지를 배포한 것까지 문제삼았다. 동아투위 위원들은 언론민주화운동의 일환으로 『동아투위 소식』지를 배포하였는데, 이로 인해 탄압을 당하였다. 위원 이영록과 이태호는 『동아투위 소식』을 대학가에 배포하여 반정부 데모를 선동하였다고 해서,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1975년 6월 24일과 25일에 각각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연행돼 조사를 받고 7월 9일에 석방되었다.

이처럼 언론인에 대한 탄압이 계속되는 가운데, 동아투위 위원들은 경찰의 방해로 월

14) 이 성명서는 언론자유가 기자의 것이 아니라 민족과 민중의 것임을 밝혔다. 점에서, 당시 언론민주화운동이 전체 민주화운동과 맥을 같이 했음을 엿볼 수 있게 해준다.(김언호, 1987. 278쪽)

례회도 가지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였다. 하지만 1977년 12월 30일 동아·조선 양 투위 이름의 “민주·민족언론선언” 발표, 1978년 4월 7일 신문의 날 기념 성명서 발표, 1979년 3월 9일 기독교회관의 ‘구속언론인을 위한 기도회’와 석방 촉구 성명 발표, 4월 27일 ‘구속 문인들을 위한 문인의 밤’ 행사에서 시국 성명 발표, 5월 9일 동아일보사 앞 시위 등 언론민주화운동을 이어갔다.(강준만, 1998, 252-254쪽) 또한 대부분의 위원들은 재야 민주인사들과 연계하여 반독재투쟁을 한 혐의로 수시로 연금되거나 미행당했으며, 예비 검속 차원에서 여러 차례 경찰서나 중앙정보부에 연행되어 1~5일씩 조사받았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유신시대 언론계의 민주화운동은 정권의 언론 탄압에 대항하는 기자·PD들의 저항운동이었다. 언론사 내부에서 저항하던 기자들은 해직 당하여 제도 언론 밖의 재야 언론인으로 밀려났어도, 당시 제 역할을 못하던 제도 언론을 정상화하고 이들의 기능을 대신하기 위해 투쟁 조직들을 만들어 언론민주화운동을 지속하였다. 이러한 언론민주화운동은 당시 민주화운동과 상호작용을 하였다. 언론이 민주화운동을 전달하지 못하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언론민주화운동이 일어났고, 이들의 지원하기 위해 민주화운동 세력들은 노력하였다. 또 제도권 언론에서 쫓겨난 언론인들은 민주화운동과 결합하여 언론민주화운동은 물론 사회민주화운동에도 기여하였다고 하겠다. 그 중 하나의 모습이 출판 분야로 진출한 해직 언론인들이다.

4. 유신 정권 언론 탄압의 희생자 피해 보상

유신정권의 언론 탄압으로 해직당한 언론인들은 지금까지 물질적은 물론 정신적으로도 보배상을 받지 못하였다. 해직의 주체인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지금까지 자사 기자들을 무고하게 해직시킨 것에 사과하지도 않았고 당연히 물질적 배상도 없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해직의 계기가 된 동아일보 광고 해약 사태가 유신 정권의 언론 탄압이었고, 해직과 광고 해약 사태 해결 과정에 정권이 개입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동아일보 해직 기자들은 정권의 언론 탄압과 이에 맞선 민주화 운동을 전개한 것이고 그런 점에서 국가로부터 정당한 보·배상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동아일보의 광고 탄압 사건은 정권의 개입 없이 이루어질 수 없는 사건이었다. 그 광고 해약 규모나 격려 광고의 감시 탄압 과정이 그렇다. 하지만 2008년 10월 29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는 중앙정보부가 광고주들을 불러 압력을 넣고, 동아일보에게 광고 재개를 위한 조건을 제시하는 등 일련의 과정에 직접 개입했음을 확

인해주기 전까지는 공식적으로 인정된 것은 아니었다.

1) 정권 개입의 단초들

동아일보의 광고들이 해약으로 중단 사태에 이르자 격려 광고가 줄을 이었다. 하지만 당시 격려 광고는 정권의 감시 속에서 이루어진 시민들의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이었다. 당시 동아일보 광고담당자들과 기자협회 분회의 증언에 따르면 카톨릭노동청년회는 격려 광고를 하기 위해 여직원 1명과 남자직원이 광고 문안과 돈을 핸드백 속에 넣고 사무실을 나오자마자 모 기관원에 의해 여직원이 연행됐다고 한다. 그래서 다른 2명이 광고문안 만이라도 양말 속에 숨겨 갖고 왔다는 것이다. 즉 격려 광고를 기관원이 감시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당시 1975년 1월4일 이원경문공부장관은 “동아일보 무더기 광고해약 사건은 신문사와 광고주와의 업무상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그 관계를 깊이 알 수 없다”고 말했지만 이효상 공화당 당의장서리는 1975년 1월16일 기자회견에서 “동아일보가 정부의 비위를 거슬리는 점이 있었지 않나 추측된다. 정부가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보다가 결국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그런 방법을 택했는지 모르겠으나, 하여간 그 같은 상황이 계속되는 것은 좋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여당 대표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한편 동아일보는 자체 취재 등을 통해 중앙정보부가 배후에서 광고해약 사태를 총지휘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 홍승면 논설주관은 1975년 1월10일 오후 일본 NHK 서울지사장 나가노(中野正一)씨와 동아방송 C스튜디오에서 가진 인터뷰를 통해 ‘광고사태가 어떻게 발생하게 되었는지 나름대로의 취재결과와 심증을 갖고 있다’고 말하고 ‘광고 수입 줄어들었다고 해서 편집방침이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어 동아일보는 1975년 1월25일 머리기사에 ‘동아광고 전면 탄압 한 달째’라는 제목의 기사를 싣고 “동아일보 및 동아방송(DBS)에 대한 광고 탄압은 지난 1974년 12월 중순께 모 기관의 지시에 따라 행정부의 관련부처 당국자들이 각 부처 소관별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각 기업체 책임자들을 불러 동아일보 및 동아방송에 광고를 내지 말도록 압력을 넣음으로써 시작됐다”고 밝혔다. 그리고 몇 개 기업에 기관원이 압력을 넣은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동아일보 광고탄압의 총책은 박정희요, 실무작업은 중앙정보부에서 담당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박정희대통령으로부터 “동아일보를 혼내주라”는 지시를 받은 중앙정보부에서 획책된 것이었다.(동아일보노동조합, 1989, 12쪽) 박정희정권 아래서 대미 로비스트로

활약했던 김한조는 1987년 당시 동아일보사 이경재 정치부장에게 광고탄압의 실상을 털어 놓았다. 그에 의하면 박대통령은 1974년 12월 중순에 중앙정보부장 신직수에게 “동아일보를 혼내주라”고 지시했다. 신직수는 그 임무를 보안담당 차장보 양두원에게 명령했다. 양두원은 이때부터 광고탄압을 지휘했다는 것이다. 중앙정보부 양두원 차장보는 김상만 사장이나 이동욱 주필에게 ‘동아의 결의와 진로’라는 정부정책에 비협조적이었던 것을 사과하는 사설을 실을 것을 요구했고, 결국 ‘긴급조치 9호를 준수한다’는 내용으로 기사를 게재하는 것으로 타협했다. 이외에도 김영삼과 박정희 영수회담의 내용, 격려 광고를 한 대학 교수, 현역 중위 색출 소동 등 다양한 사례에서 정권이 동아 광고 탄압에 관여했음을 알 수 있는 방증 자료들은 많았다.

2)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결정

그러나 2008년 10월 29일 밝힌 과거사위 결정은 정권의 언론 탄압이 있었다는 공식적인 확인이고, 동아일보의 해직 언론인들은 정권의 언론탄압에 저항하는 민주화운동을 하다 해직된 것이다. 과거사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동아일보〉 광고탄압 사건’은 중앙정보부 등 국가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 침해 사건이었다”며 “박정희 유신 정권 하에서 언론 자유는 헌법과 긴급조치 등 많은 제약과 규제를 받았고, 특히 중앙정보부는 직무범위를 벗어나 동아언론 탄압의 모든 역할을 주도했다”고 결정했음을 밝혔다. 과거사위 보도자료에 따르면 중앙정보부는 “1974년 12월 중순경부터 1975년 7월 초순까지 지속적으로 〈동아일보〉와 계약한 광고주들을 남산 중앙정보부로 불러 〈동아일보〉와 〈동아방송〉, 〈여성동아〉, 〈신동아〉 심지어 〈동아연감〉에까지 광고 취소와 광고를 게재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와 보안각서를 쓰게 하는 방법, 소액 광고주까지 중앙정보부에 출두하게 하거나 경찰 정보과 직원에 의한 연행 조사, 세무서의 세무사찰, 백지광고에 대한 격려 광고를 게재한 교수가 속한 학교에 압력을 넣는 방법”을 썼다고 한다. 그러므로 과거사위는 국가에게 “〈동아일보〉사와 해임된 언론인들에게 사과하고, 피해자들의 언론 자유 수호 노력에 대해 정당한 평가와 피해 회복을 통해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 더불어 과거사위는 동아일보사에게도 민주화의 진전으로 언론 자유가 신장돼 권력 간섭이 사라진 이후까지 해임 언론인들에 대한 아무런 구제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므로 그들에게 사과하고 피해자들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시키는 등 적절한 화해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 동아일보사가 언론으로서 동아일보를 지키기 위해 헌신했던 자사 언론인들을 보호하기는커녕 해임했기 때문이다.

3) 피해보배상의 방법

법제도적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안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국가의 보배상을 집행할 근거를 갖기 위해서는 입법 과정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국회가 언론민주화 과정을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하고 이 과정에서 희생한 언론인의 명예회복과 그에 상응하는 물질적 보배상을 규정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조치다.

참고문헌

- 강준만(1998). <카멜레온과 하이에나- 한국언론 115년사>. 인물과 사상사
- 관훈클럽신영연구기금(1982). <한국언론관계법령전집>
- 김남석(1994). 한국신문산업 구조개편에 관한 정치경제학적 연구, <서울대학교 신문학과 박사학위 논문>
- 김민남 외(1993). <새로쓰는 한국언론사>. 아침.
- 김민환(2002). <한국언론사> 개정판. 나남출판
- 김삼웅(1990). <한국곡필사 2 - 유신시대의 곡필>. 신학문 총서 09.
- 김성환(1985) 4월 ‘혁명에 관한 역사적 고찰’ 해방 40년의 재인식 I. 돌베개
- 김언호(1975) 르뽀 자유언론운동. <신동아> 3월호.
- 김언호(1987). <출판운동의 상황과 논리 - 우리 시대의 출판운동에 대한 한 출판인의 현장보고>. 한길사.
- 김학천(2007. 2. 26) 권력과 방송의 무한 대립. <PD저널>,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http://www.pdjourn.com/news/articleView.html?idxno=10093>
- 동아일보노동조합(1989). <동아자유언론실천운동 백서>. 동아일보사.
-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2000). <민주화운동 25년>. 다섯수레.
-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2005). <자유언론>. 해답솔.
- 문종대(1990). 1970년대 신문산업의 자본축적 과정. 김왕석, 임동욱 외 지음 <한국언론의 정치경제학>. 아침.
- 민주언론운동협의회 편(1988). <보도지침>, 두레.
- 박지동(2000). 1970년대 유신독재와 민주언론의 말살. <한국 언론 바로 보기>. 다섯수레.
- 송건호(1990). <한국현대언론사>. 삼민신서 38. 삼민사.
- 유재천(1991) 한국언론의 생성과 발전과정. <한국의 언론 I> 한국언론연구원.
- 정진석(1985) <한국현대언론사> 전예원
- 조선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1993). <자유언론, 내릴 수 없는 깃발>. 두레.
- 주동환(1993). 한국정부의 언론정책이 신문산업의 변천에 미친 영향에 관한 일고찰 - 제 1 공화국에서 제5공화국까지. 서울대학교 신문학과 박사학위논문
- 최종수(1981). 사설 무용론의 원인 내용 분석. <인석 박유봉 교수 화갑기념논총>. 전예원.

5·18민주화운동과 1980년 언론투쟁

고 승 우

(언론사회학 박사 ·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공동대표)

1. 80년 광주항쟁과 언론투쟁 역사 41년 만에 바로잡혀

- 기협과 5.18 재단 5·18민주화운동 관련 상호 협력·공동사업 펼치기로 합의

국회본회의는 2021년 5월 21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의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범위에 1980년 강제 해직된 언론인을 포함시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1996년 제정 당시 해직이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번에 1980년 광주 항쟁 기간 동안 신군부에 저항해 강제된 해직 언론인도 관련자로 포함시키도록 개정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을)이 대표 발의한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1980년 한국기자협회와 전국 언론사 기협 분회 소속 언론인들이 전두환 신군부의 광주학살 만행에 항거해 검역, 제작거부를 한 뒤 41년만에 1980년 광주항쟁과 언론투쟁이

하나가 되었다. 이로써 광주항쟁이 전국 규모에서 벌어진 진실이 만천하에 확인되고 광주항쟁과 언론투쟁에 대한 역사바로잡기가 완성의 단계에 다가간 것이다. 동시에 전두환 신군부가 정권을 찬탈하면서 광주항쟁과 언론항쟁을 분리시키고 광주항쟁을 지역항쟁으로 격하, 조작하려던 반민주적 공작이 41년 만에 격파되고 정의가 확립된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2021년 5월 21일은 한국 현대사와 언론역사에서 너무 뜻깊은 날이다.

한국기자협회(회장 김동훈)와 5·18기념재단(이사장 정동년)은 6월 24일 1980년 5월 신군부에 항거 후 불법 해직된 언론인들이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됨에 따라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진실과 가치 계승을 위한 상호 협력·공동사업을 펼치기로 합의했다. 5·18 왜곡과 편향 공동 대응, 악의적인 가짜뉴스 배격 방안 논의 등이 대표적이다. 한국기자협회는 지난 2006년, 5월 항쟁 기간 동안 언론인들의 신군부에 대한 투쟁을 기리기 위해 5월 20일을 ‘기자의 날’로 제정하여 5·18기념재단과 토론회 등 공동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5·18언론상(2020~)을 후원하고 있다.

1) 문 대통령 1980년 언론투쟁 역사 수차례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1980년 전국 언론인들이 광주항쟁 기간 동안 전두환 신군부에 맞서 검열, 제작거부투쟁을 벌인 것에 대해 진상 규명, 역사 바로 잡기 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5·18 민주화운동 제37주년 기념사에서 광주항쟁의 역사적 의미와 함께 “수많은 젊은이들이 5월 명령의 낮을 위로하며 자신을 던졌습니다.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을 촉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진실을 밝히려던 많은 언론인과 지식인들도 강제해직되고 투옥 당했습니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이 광주항쟁과 관련해 투쟁한 수많은 젊은이의 투쟁, 언론인 및 지식인의 해직과 투옥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언론을 포함한 사회 민주화 운동의 진상 규명과 역사바로잡기를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2020년 5월 18일 제40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경찰관뿐만 아니라 군인, 해직 기자 같은 다양한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축전을 보내 기자의 날을 축하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한국기자협회가 2021년 5월 2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16회 '기자의 날' 기념식에 보낸 축전을 통해 “민주주의와 언론자유를 위해 청춘을 바친 원로 언론인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취재 현장과 편집국에서 땀 흘리고 계신 모든 언론인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언론 뒤에 따라올 수 있는 단어는 오직 자유다. 독재와 검열 언론 통제에 맞선 전남매일신문 기자들의 사직서 제출과 한국기자협회의 검열 거부라는 용기있는 행동이 있었기에 오월의 진실은 광장으로 나올 수 있었다”고 했다. 이어 “민주주의가 성숙해지고, 언론 환경이 혁명적으로 변했다. 더욱 투철한 기자 정신과 보다 균형 있고 조화로운 언론의 역할이 강조되는 시대”라며 “우리 언론이 시대의 정신을 깨우고, 흔들림 없이 진실만을 전하며 항상 국민과 함께해 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2020년 제15회 '기자의 날' 기념식에 보낸 축전을 통해 "40년 전, 80년 5월 기자들은 독재와 검열에 맞서 제작 거부를 불사했다. 진실과 양심의 자유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돼주었다. 기자들은 체포돼 모진 수난을 당하고 언론사는 문을 닫아야 했지만기자협회와 기자들의 투쟁은 5·18 민주화운동의 진실을 알리는 밑알이 됐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여러분의 노고 덕분에 우리 민주주의를 새로운 장을 열었고, 또 열어가고 있다"며 "기자의 양심에 기반한 진실한 보도를 위해 항상 노력해주신 여러분께서 더 크고 넓은 '언론 자유의 시대'를 만드는 데 앞장서주시리라 믿는다"고 당부했다. 기자의 날은 1980년 5월20일 기자들이 전두환 군사정권의 언론 검열에 맞서 검열·제작 거부에 들어간 날을 기념하기 위해 지난 2006년 제정됐다.

2. 전두환 신군부의 최악, 최대의 언론탄압

전두환 신군부가 80년 언론투쟁에 대해 폭거를 저지른 이유는 신군부의 광주학살 만행에 전국 언론인들이 검열, 제작거부로 정면 대항했기 때문이다. 당시 언론인들은 한국기자협회가 주축이 되어 10.26뒤 박정희 정권 18년 동안 자행된 언론탄압을 비판하면서 민주주의와 언론자유 회복, 유신언론인 청산 등을 외치며 5월 16일 전국 언론사에서 검열거부를 감행할 계획을 확정했었다. 그러나 신군부가 80년 5월 17일을 기해 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면서기자협회 김태홍 회장 등 간부들에 대해 체포령을 내렸다. 동시에 대

학가와 시민사회의 민주인사, 야당 정치인들을 대거 연행, 감금하는 폭거를 저지르며 광주 학살을 자행하기 시작했다. 신군부는 광주 학살의 진상을 왜곡하고 광주를 폭도로 모는 허위발표를 언론에 보도하도록 강제했다.

신군부가 1980년 5월 17일부터 광주에서 군인들의 민간인 학살을 자행하는 사태가 벌어지자 전국 수많은 언론사 기자들은 각 사별로 기자 총회를 열어 향후 대책을 논의했고 5월 20일을 전후해 검열 및 제작 거부 투쟁에 돌입했다. 언론인들의 신군부에 대한 저항은 광주지역에서의 민중 항거를 제외하고는 전국적으로 유일했다.

광주에서 엄청난 유혈 참극과 저항이 벌어지는데 기자들이 맨손으로 신군부에게 저항하는 동안 전두환 등의 언론사에 대한 협박 공갈도 대단했다. 계엄 확대 조치로 언론사 앞에 장갑차와 무장군인이 진주하는 등 공포분위기가 조성되어 당장 무슨 일이 벌어질듯 긴박한 분위기였다.

기자들은 대부분 편집국이나 보도국에서 철야하면서 투쟁했다. 광주 항쟁기간 동안 신문, 방송, 통신의 제작은 중단되지 않아 국민들에게 언론의 군부에 대한 항거가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광주항쟁기간 동안 광주 일원을 제외하고 신군부에 저항한 세력은 언론계가 유일했다.

1980년 5월 20일부터 27일까지 신군부의 광주학살을 보도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언론인들이 검열 및 제작 거부를 벌일 당시 신군부는 장갑차를 언론사 정문에 배치하는 식의 위협을 가했다. 하지만 그 투쟁은 광주가 신군부에 함락될 때까지 지속됐다.

광주가 신군부에게 강점된 뒤 검열거부 투쟁도 막을 내리게 된다. 많은 기자들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투쟁을 접었다. 광주 민주시민이 온몸으로 신군부의 폭거에 맞설 때 기자들은 펜을 놓고 광주시민과 뜻을 같이 했다. 그 때문에 광주를 점령한 신군부의 언론탄압도 자신했다.

80년 언론인 투쟁은 광주항쟁의 일부임에도 광주항쟁을 지역적인 문제로 국한하려는 신군부에 동조적인 정치권이나 공범 역할을 했던 일부 언론사에 의해 40년 동안 분리된 개념으로 왜곡돼왔다.

전두환 전 대통령(89)은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기 위해 정부가 1985년 비밀리에 조직한 ‘80위원회’에 직접 관여했고 80위원회는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와 보안사 등이 참여해 5·18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왜곡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문화공보부(문공부) 해외공보관실은 ‘광주사태진상 해외홍보책자 발간계획 보고’라는 제목의 문건을 통해 국방장관이 같은 해 6월 초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한 “5·18 직전 북한군이 남침을 준비하고 있었으며, 정치세력의 배후 조종을 받았다. 시민들이 계엄군에게 기관총 등으로 무차별 사격을 가하고 광주교도소를 습격했다”한 내용을 담았다. 이 계획은 전두환에게 보고되었다<경향신문 2020년 4월 23일>.

한편 신군부가 80년 언론학살 당시 신군부에 저항한 언론인과 함께 일부 언론인들을 부조리 등의 해괴한 구실을 해직 사유로 블랙리스트에 적어 해직언론인들의 이른바 성향을 여러 가지로 분류한 것도 공작정치의 결과였다. 즉 80년 해직언론인의 구심점을 파괴하려는 것으로 이는 동아, 조선 투위가 동일한 사유로 해직되자 단일 대오를 형성해 민주화 투쟁을 벌인 것을 보고 만행을 자행한 것이다. 80년 해직언론인 가운데 근거 없이, 법적 절차 등을 전혀 거치지 않은 채 불명예스런 명목으로 신군부의 블랙리스트에 기재된 분들은 심적 고통은 엄청나다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배상 등의 조치가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신군부는 이어 일부 80년 해직언론인을 복직이라는 허울을 씌워 신규 취업시킨 것도 80년 전체 해직언론인의 투쟁력을 약화시키려 했다. 신군부는 언론사 통폐합도 법률적으로 문제 삼을 수 없는 조건을 만들어 법적 제소 등에 대비했는데 이런 공작정치 수법은 이명박 정권 시절 MBC에서 계약직 아나운서를 뽑아 법률적으로 직원신분이 계속 유지토록 한 것에서도 드러났는바 적폐세력의 언론 공작은 시대에 따라 다양한 형식으로 진화되고 있다. 80년 언론 학살을 바로잡는 것이 이런 언론공작의 뿌리를 제거하는 일이 될 것이다.

<별첨자료(1) 80년 투쟁언론인에 대한 신군부의 취업제한 및 동향파악 블랙리스트>.

3. 5·17, 5·18 관련 사건 공소장과 대법원 판결에 포함된 언론학살

1) 1, 2심 공소장과 판결문 내용

80년 언론인 학살의 진상은 문민정부 들어 전두환, 노태우의 내란죄 수사를 담당한 12·12 및 5·18사건 특별수사본부가 1996년 1월 24일 전두환, 정호용 등 11명의 내란수괴에 대한 혐의사실을 발표하면서 드러났다. 「5·17, 5·18 관련 사건 공소장」에서 80년 언론인 대량 해직과 언론사 통폐합이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의 집권계획 일환으로 자행된 내란의 주요 과정이었다는 사실이 공표되었다. 검찰이 언론학살을 자행한 범죄인으로 지목한 사람은 전두환, 노태우, 허삼수, 허화평 등 4명이다.

전두환·노태우 등의 내란죄에 대한 1996년 8월 26일의 1심 및 그 해 12월 17일의 2심 판결문에서 80년 언론학살은 전두환을 정점으로 한 내란 과정에서 이뤄진 불법 행위라는 것이 밝혀졌다. 검찰의 언론학살 수사결과는 1, 2심 재판을 통해 대부분 사실로 인정되었고, 전·노씨가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항소심 판결문에 적시된 범죄 사실은 최종적인 사법적 판단이 되었다¹⁵⁾. 공소장과 판결문의 해당 부분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 전두환은 1980년 6월경 허문도 문교공보분과위원 등이 언론사 통폐합 방안, 언론인 정화계획, 언론관계법 제정 등을 내용으로 작성한 ‘언론계의 정화-정비계획’을 보고받고 그 전면 시행은 보류한 상태에서 문교공보분과위원회를 통해 ‘언론계 자체 정화계획’을 수립하게 하여 1980년 7월 24일경 이광표 문화공보부 장관에게 전달되도록 하고 1980년 7월 30일 신문협회와 방송협회가 ‘언론 자율정화 및 언론인 자질 향상에 관한 결의문’을 발표하게 하여 자율정화 형식을 취한 후 7월말경 이상재 언론대책반장이 작성한 보도검열 비협조자 등 언론계 해직 대상자 336명의 명단을 이광표 장관을 통해 해당 언론사에 통보, 각 언론사에서 대상자들의 사직을 종용하여 이들을 포함한 933명이 1980년 10월까지 소속 언론사들로부터 해직하게 하고...”

15) 80년 언론인 해직은 신군부가 저지른 범죄라는 사실이 대법원 에서 확정된 뒤 80년 해직언론인들에 대한 배상과 명예회복 등의 조치가 급물살을 타는 듯 했다. 즉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인 1997년 대선 공약으로 80년해직언론인의 원상회복을 약속했고, 집권당이 된 국민회회가 특별법으로 그 해결을 시도했다. 그러나 이 또한 적폐세력들의 완강한 반대와 IMF 재정난 등을 이유로 물거품이 된다.

“1980년 10월 초순경 보안사 이상재 언론대책반장이 허문도 정무제1비서관의 검토자료를 토대로 자율 결정의 형식에 의한 언론통폐합을 내용으로 하는 ‘언론 건전육성 종합방안 보고서’를 작성하자 피고인 전두환·노태우는 허화평·허삼수와 함께 10월 중순경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에서 김경원 비서실장, 이광표 문화공보부 장관, 우병규 정무제1수석비서관, 이웅희 공보수석비서관, 허문도 정무제1비서관이 참석한 가운데 권정달로부터 이를 보고받았으나 김경원 비서실장, 이웅희 공보수석비서관들의 반대로 그 추진을 보류하였다가, 그 무렵 허화평·허삼수는 다시 허문도로부터 언론통폐합의 필요성에 대해 수차례 설명을 듣고 이에 동조하고, 피고인 전두환은 그 실행을 결심하여 허문도로 하여금 ‘언론 창달계획’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만들게 한 다음 11월 12일 이광표 장관이 문화공보부의 결재안으로 가져오자 이를 결재하여 피고인 노태우에게 전달하게 하고, 그 집행을 의뢰받은 피고인 노태우는 16시경 한용원 정보처장과 김충우 대공처장에게 언론사 사주들을 불러 신속히 처리하되 그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하여 18시경 중앙언론사 사주들은 보안사 대공처가, 지방 언론사 사주들은 정보처 주관하에 지방의 각 지역보안부대가 소환하여 통폐합 조치에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고 이에 따라 지방지를 1도1사 원칙에 따라 10개로 통합하고 공·민영 방송구조를 공영방송 체제로 개편하는 등 신문 28개, 방송 29개, 통신 7개 등 64개 매체를 신문 14개, 방송 3개, 통신 1개 등 18개 매체로 통폐합하고 이 과정에서 305명의 언론인이 추가로 해직되도록 하면서 이를 자율 추진 형식으로 하기 위해 허문도·이수정 비서관으로 하여금 자율 결의문과 홍보문을 작성하게 하여 이를 허만일 문화공보부 공보국장에게 전달, 11월 14일 신문협회로 하여금 ‘건전언론 육성과 창달을 위한 결의’를 하게 하는 등 일방적으로 언론기관 통폐합 방안을 마련한 후 군 정보수사기관을 동원해 이를 실행하고...”

2) 대법원 판결 내용

신군부의 80년 언론폭거에 대한 역사적 범죄 사실은 1997년 4월 17일 전두환, 노태우와 관련한 12.12와 5.18사건의 대법원 판결문을 통해 역사적 범죄로 확정되었다. 12.12와 5.18사건의 대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전두환은 국군 보안사령관으로서, 1980년 허문도 국보위 문교공보분과위원 등이 언론사 강제해직, 언론사 통폐합 등을 내용으로 작성한 ‘언론계의 정화, 정비계획’을 보고 받는다. 전두환은 이어 국보위 문교공보분과위를 통해 ‘언론계 자율정화계획’을 수립케 해 같은 해 7월 이광표 당시 문화공보부 장관에게 전달되도록 했다. 이어 같은 해 7월 30일 신문협회와 방송협회가 ‘언론자율 정화 및 언론인

자질향상에 관한 결의문'을 발표케 하여 자율정화 형식을 취한다. 그 뒤 이상재 당시 보안사 언론대책반장이 작성한 보도검열 비협조자 등 언론계 해직대상자 336명의 명단을 이광표 장관을 통해 해당 언론사에 통보, 각 언론사에서 해직대상 언론인들의 사직을 종용해 이들을 포함한 933명이 10월까지 소속 언론사로부터 해직되게 했다.

4. 진실화해위의 80년 언론인 불법 해직 관련 결정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가 2010년 1월 7일 1980년 언론인 강제해직 및 언론사 통폐합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정치군인들이 정권 탈취를 목적으로 언론을 상대로 불법행위를 자행한 지 30년만이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는 1980년 언론인 강제해직, 언론통폐합 조치 및 정기간행물 및 출판사의 등록취소 조치에 대해 공권력을 이용하여 강압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책임을 인정하고, 관련 피해자에게 사과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는 이 사건의 신청인들을 비롯한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권고했다<별첨 2 진실화해위 의 80년 언론인 불법 해직 관련 결정문>.

5. 80년 언론투쟁에 대한 진상 규명과 특별법 제정 노력

80년 5월 광주항쟁 발생 후 이틀 뒤부터 항쟁기간 내내 전국 언론사 기자들은 검열 및 제작 거부에 돌입해 신군부의 민간인 학살에 항의했다. 광주항쟁기간 동안 신군부에 저항한 세력은 광주일원의 시민들을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언론인들이 유일했다. 신군부는 언론인 투쟁을 내란 책동 과정에서 불법 강제 해직으로 몰아가면서 공포정치를 자행한 것은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

그러나 80년 언론투쟁이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1995년 12월 시행)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광주항쟁을 광주 지역항쟁으로 축소하려던 적폐세력의 공작 결과이다.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에서 관련자는 사망, 행방불명,

상이를 입은 자로 한정되어 있어 80년 언론인들의 80년 5월 언론민주화 투쟁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이 법의 1조는 “이 법은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이하 "관련자"라 한다)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그에 따라 관련자와 그 유족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되어 있다.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이처럼 법 시행 대상에 해직만 제외되었는데 이는 민주화보상특별법, 부마항쟁법 등 민주화 운동과 관련한 여러 법에는 그 대상에 해직을 포함시킨 것과 대비된다. 이는 광주항쟁 당시 전국 언론사의 검열 항거를 광주에서 제외시키려는 광주학살 잔당과 신군부에 부역한 언론사 사주들이 합작해 관철시킨 결과이다.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의 제1조(목적)에 규정된 관련자 ‘사망, 행방불명, 상이를 입은 자’에 ‘해직이 된 자’가 추가되는 것으로 법 개정을 하는 것이 역사바로잡기라는 것을 주장했고 개혁적 의원들이 이를 받아드려 법안을 상정한 것이다.

6. 언론 투쟁역사 바로잡기, 전체 사회의 비정상 정상화 첫걸음

80년 언론투쟁이 역사 속에 광주항쟁의 일부로 합체되기 까지 정말 오랜 세월이 흘러야 했다. 일제가 한반도를 강점했던 36년보다 더 긴 세월이 흘러야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전두환 신군부가 광주를 총칼로 유린하면서 벌인 내란, 정권찬탈 사건 과정에서 언론을 세계 언론 탄압사에서 그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반인륜적이면서 전면적, 심층적, 야만적으로 파괴하고 진실을 은폐, 허위조작 했기 때문이다. 전두환 신군부는 권력기관을 총동원해 언론투쟁에 대한 철저한 공작정치로 진실을 거짓으로 낙인찍고 대중기만을 기만했기 때문이다. 신군부에 의해 불법 해직당한 언론인을 5·18 관련자로 포함시키는 것은 역사바로잡기의 일환으로 ‘광주 정신’을 부정하는 일부 세력의 왜곡과 편협에 맞

서고 5·18의 전국화 실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었다.

그러나 5.18특별법이 1996년 제정될 당시 신군부와 그 추종세력의 반대로 1980년 언론인 투쟁은 이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는 4.3특별법, 부마항쟁법 등 여러 민주화 관련법에 모두 해직이 들어 있는 것에 비춰 그 형평성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다. 동시에 광주항쟁 당시 신군부의 반헌법적 폭거에 대해 전국 언론인들이 항거한 것은 당연히 광주항쟁의 일부로 포함시켜야 했다. 그것은 역사바로잡기 차원에서 당연했고 ‘광주의 전국화’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었다. 1980년 언론인 투쟁은 41년 만에 광주항쟁의 일부로 인정하는 특별법이 빛을 보면서 역사바로잡기가 달성되었으며 동시에 다시는 국가 폭력에 의한 언론 탄압이라는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안전판이 국회 입법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다.

광주 항쟁 발생이후 41년이 되는 오늘날에도 5·18 당시 계엄군에 발포 명령을 내린 자가 누구인지, 계엄군이 시민군을 향해 헬기 사격을 가했는지 등 지금까지도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1980년 언론투쟁이 광주 항쟁의 일부로 법제화되면서 광주항쟁의 진상이 철저히 규명되는데 한발 더 다가선 것을 의미한다. 이런 노력이 지속되고 그에 따른 법적 조치가 완벽히 취해질 때 역사와 정의, 진실을 외면한 적폐세력들이 광주항쟁을 폄훼하는 망언이나 행동을 하지 못하게 막는 원천적인 안전판과 방어막이라는 것을 확신한다.

1980년 언론투쟁에 대한 역사적 자리매김이 이뤄진 것을 계기로 박정희 정권이 자행한 언론 탄압을 상징하는 75년 동아·조선 투쟁 등 해방이후 전개된 언론 민주화투쟁 등에 대한 올바른 자리매김과 원상회복이 시급히 취해져야 한다. 언론 투쟁역사의 정상화가 전체 사회의 비정상을 정상화하는데 첫 단추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국회는 시대의 요구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언론적폐청산과 언론정상화 등에 대한 입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별첨자료(1)

80년 투쟁언론인에 대한 신군부의 취업제한 및 동향파악 블랙리스트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10.27법난/신군부 언론통제사건 조사결과 발표자료 49-51쪽〉

가. 해직언론인 취업제한 조치

보안사는 강제 해직된 언론인의 취업을 제한하기 위하여 ‘총무처 비위관련 공직자 취업 제한 기준에 준하여 형평을 유지하기 위한 취업제한’이라는 명분으로 「정화언론인 취업허용 제한기준」을 만들었다. 해직언론인은 공무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총무처 비위 관계 공직자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하였고, 언론사 및 관계단체, 공무원, 국영업체, 정부 투자 및 출자법인과 단체에 취업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사기업의 홍보 및 광고 담당 요원까지를 해직언론인의 취업을 제한하였다.¹⁶⁾

위 문서에 의한 취업 제한기간 및 ‘국시부정 및 반정부’를 이유로 한 영구 취업불허자는 다음과 같다.

〈취업제한기간〉

구분	총계	부국장 이상	부장 이하	언론사 취업불허자		
				국시부정 및 반정부	편집국장 주 필	소계
인원	711	42	627	28	14	42
기 한		1년	6개월	영구		

〈취업불허명단〉

사별	성명	직책	비고
동아	박권상	논설주간	극렬 반정부
	박병서	문화부 기자	국시부정
	강성재	정치부 기자	"
	김용정	경제부 기자	"
	윤재걸	출판국 기자	극렬 반정부
한국	박 실	정치부 차장	"
	이 형	논설위원	"
	김용구	논설위원	"
	김영호	경제부 기자	"
중앙	김승한	주필	"

16) 사건기록철 제2권 제249쪽, 2차, 「정화언론인 취업허용 제한기준」.

	김원태	편집부 기자	"
	최형민	편집부 기자	"
	이흥재	"	"
조선	김상길	부산 주재기자	"
합동	박석기	리더스다이제스트 부주필	"
	이문승	외신부 차장	국시부정
	고승우	사회부 기자	"
	윤후상	사회부 기자	"
	정수용	사회부 기자	"
	박원근	외신부 기자	"
	정동채	편집부 기자	"
동양통신	조홍래	외신부장	극렬 반정부
	임한순	외신2부 차장	"
	김영진	외신 기자	"
TBC	한중범	편집부 기자	"
	김준범	편집부 기자	"
DBS	김 근	사회부 기자	"
	백한기	해외부 기자	"

이후 보안사는 1980. 9. 15. 정화언론인 711명 중 국시부정 및 극렬 반정부자 28명을 제외한 인원(이하 1차 순화시킨 후, 타업종 취업을 허용할 수 있도록 노태우 사령관에게 건의하여 결재를 받았고¹⁷⁾, 같은 달 30. 13명을 영구취업제한하고 나머지 인원은 취업을 허용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분류기준으로 다시 결재를 받았다.¹⁸⁾

등급	분류기준	인원 ¹⁹⁾	제한기준
A	국시부정행위자 제작거부 주동자(극렬분자) 및 배후조종자 특정 정치인 추종 및 유착자	13	영구
B	제작거부 주동 및 선동자 (차장급 이상 포함) 부조리행위자 기타 파렴치 행위 및 범법자	96	1년
C	단순 제작거부 동조자 부조리 행위자 기타 자체정화자	602	6개월

보안사의 위 9. 30.자 「정화언론인 취업허용건의」에서는 취업을 허용할 경우 장점으

17) 사건기록철 제2권 제268쪽, 2차, 「정화언론인 타업종 취업허용건의」, 1980. 9. 15.

18) 사건기록철 제2권 제155쪽, 「정화언론인 취업허용건의」, 1980. 9. 30.

19) 인원(이하 1차 순화시킨 후, 타업종 취업을 허용할 수 있도록 노태우 사령관에게 건의하여 결재를 받았고)에 대한 명단이 첨부되어 있지 않아, 위 문서에 의한 영구취업 제한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었다.

로 급수에 따라 반성개전의 정이 있는 자에 대하여 국가발전에 기여 기회 부여할 수 있고, 비위공직자와 동일조건으로 취업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신분상 공무원과 준한다는 의식을 심어주고, 형평성을 유지하며, 반성자에게 취업기회를 부여하여 불평불만자의 집단화를 방지할 수 있다고 분석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허용업종 취업자는 퇴직사의 재직증명발급 시 자연스럽게 각서 받고 이를 문공부에 제출케 하여 간접적으로 순화효과를 기하고 취업허용을 구실로 다시 한번 언론인들을 정부의 통제 하에 두려고 하였다.

한편, 80. 7 .1. 이후 언론정화조치대상자에 포함된 자 및 정화조치대상자에서 제외되었거나 누락된 자로서 입건, 수사 또는 재판에 계류 중인 자와 수사종결(기소유예처분) 또는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취업이 제한되는 조치를 취하였다.²⁰⁾ 그 내용은 표와 같다.

〈 대상자별 조치기준〉

분류	정화조치 포함자	정화조치 누락자
수사보류자(기소유예 처분자 포함)	수사종결 내용 및 비위정도에 따라 등급 격상 조치	수사종결내용에 따라 A급 또는 B급 분류 처리
재판계류자	형 확정 시 유죄자는 등급 격상 조치 (B급 → A급) 반공법 국보법 위반자(국시부정행위자)는 A급 분류	유죄확정자 중 반공법 국보법 위반자는 A급 기타 자는 B급 분류

언론인들의 취업제한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고, 이는 문공부에서 1980. 9.경 작성한 「정화 언론인 취업문제」라는 문서에서도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²¹⁾

문공부는 해직 언론인에 대한 취업을 제한할 시

- 대부분이 의식분자이며, 부유하지 않은 실정으로 제작시 반정부 불평 집단화할 것임
- 동아, 조선 투위와 같이 집단행동을 벌일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안정되고 있는 기존 언론인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치며, 내외 언론에 부정적 요인이 될 것임
- 소수의 반체제 분자 이외 언론 이외 분야의 취업을 막아야 할 이유와 명분이 희박함 이와 같이 분석하고, 다음과 같은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가. 소수의 악질적인 반정부 반체제 분자 이외의 해임자들에 대해서는 언론 이외 타 분야의 취업을 허용함

나. 단 취업자에 대하여는 향후 반시국적 언동을 하지 않음은 물론 새시대의 국가건설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는 각서를 징구함. 퇴직 언론사에서 재직증명 발급시, 각

20) 사건기록철 제2권 제224쪽, 「범법(소추) 언론인 취업제한조치 건의」.

21) 사건기록철 제9권 제1987쪽, 문화공보부, 「정화언론인 취업문제」 1980. 9. 10.

서 장구 문공부에 제출
다. 취업허용방침은 언론인 등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알려지도록 함 (현재 각 기업체는
정부방침을 몰라 취업 기피 경향)

별첨자료(2)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Republic of Korea

아래 자료는 진실화해위 사이트의 「1980년 언론사 통폐합 및 언론인 강제해직 사건」 진실규명 중 80년 5월 언론 투쟁 관련 부분입니다.

3. 언론인 해직

가. 해직 경위

신군부는 1979년 12·12로 국가권력을 장악한 후 1980. 3. 언론대책반을 통해 K-공작계획을 입안하고, 언론계 인사들의 성향을 분석(양호, 협조희망, 적극, 경계, 소극 및 3김에 대한 지지성향)하여 언론사주 및 언론사 간부들과 면담을 추진하여 신군부에 협조하도록 회유하였고,201) 언론보도에 대하여 총 1,083,696건을 사전 검열하고 29,010건을 보도 관제하는 등 언론 통제를 강화하였다.

이에 언론계는 신군부의 조치에 대항하여 1980. 2. 20. 경향신문을 시작으로 각 언론사 별로 1980. 5. 20.까지 ‘언론검열 철폐와 자유언론실천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자유언론실천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하였고, 한국기자협회는 1980. 5. 16. 검열거부 선언문을 발표하면서 5. 20.부터 검열을 거부하는 제작거부에 돌입한다고 선언하였다.202)

신군부는 언론계의 언론검열철폐와 자유언론실천운동을 예의주시하면서 보안사 요원들로 하여금 언론인과 언론기관의 동정을 살피고 언론의 논조 및 언론인에 대한 비리조사에 착수하였다.203) 1980. 5. 자유언론실천운동이 확산되자 신군부는 5. 17.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함께 발동한 포고령 10호를 명분으로 언론의 자유를 주장하는 기자들을 유언비어 유포 및 내란 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해직시켰으며,204)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된 광주시민을 폭도로 보도하도록 지시하면서 보도를 통제하였다.205)

신군부는 제작거부 등 언론계가 조직적으로 저항하자 보안사 요원들을 통해 해직대상자를 선정하여 명단을 작성하였는데, 언론기자들을 A(국시부정자), B(제작거부), C(단순 제작거부, 부조리 행위자, 자체 정화자)로 구분한 후,206) 이를 문화공보부가 언론사의 자율결의 형식으로 집행하도록 하여 933명 이상의 언론인을 해직하도록 하였고, 해직된 언론인의 취

업을 제한하거나 불허하고,207) 해직언론인의 동향을 파악하여 동향 내용에 따라 A, B, C, D 등급으로 구분해 수시로 등급을 조정하였다.208)

신군부는 1980. 8. 언론인 대량해직에 이어 1980. 11. 언론통폐합 시 언론사 임직원들은 고용승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209) 수시로 언론인을 해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305명 이상의 언론인을 추가로 해직하였다.210)

나. 해직 규모

1980년 해직된 언론인은 1980. 8. 16. 문화공보부가 작성한 「언론인 정화결과」에 의하면 총 933명, 1993년 공보처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825명, 2000. 11. 문화관광부의 「해직언론인 현황」에 의하면 800~1,000명이다.

‘80년 해직언론인 협의회’는 약 1,300여 명이 강제 해직되었다고 주장하였고, 2007. 10. 25. 국방부(과거사위원회)가 공개한 「언론 정화자 명단」에 의하면 해직자는 938명이다. 한편,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 1980년 당시 강제해직되었다고 신청된 사건은 약 482건이다.

하지만 위 자료들은 작성 목적과 해직자 분류 기준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위 자료에 근거하여 당시 국가기관에 의해 강제적으로 해직된 언론인의 규모를 확정할 수는 없다.211)

한편, 통폐합 대상 언론사의 언론인 중 1981년 대기발령 및 무보직의 방식으로 해직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212) 언론사 임직원은 통폐합 과정에서 고용승계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다.

해직과 관련한 보상은 1988년 언론청문회 이후 MBC, KBS에서 해직자들에 대한 구제 조치로서 보상이 일부 이루어졌다.213) MBC, KBS 이외에 해당 언론사로부터 보상이 이루어지거나, 소송을 통해 언론사나 국가로부터 피해구제를 받은 사례는 찾을 수 없었다.

다. 해직 사유

1) 국시부정·반정부 하였다는 사유로 해직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가 공개한 「언론 정화자 명단」에 의하면, 정화보류자 44명과 언론정화자 938명을 합하여 982명의 성명과 등급이 수기로 표시되어 있다. 언론정화자의 해직사유를 보면, 국시부정 10명, 반정부 성향 243명, 기회주의무능자 123명, 부조리 341

명, 근무태만 3명, 퇴사퇴임 50명, 기타 103명, 미기재 109명이다.

보안사가 작성한 「문제 언론인」에 의하면, 언론인 중 국시부정·반정부의 이유로 검거된 언론인은 22명이었다.²¹⁴⁾ 1980. 5. 24. 보안사에서 작성한 「일선기자 반발에 따른 당국 언론대책」에 의하면 “5. 20. 기해 보도검열거부를 결의 중앙일보를 필두로 5. 23. 현재 서울, 신아, KBS를 제외한 전 언론사의 일선기자들이 사실상 언론제작거부에 동의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동기자는 42명이고, 기자협회, 동아조선투위 24명이다.”라면서, “포고령 10호 적용 강제조치로 반발 주동기자들을 입건 구속 조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포고령 위반 혐의로 구속된 뒤 해직된 경향신문 조사국장 서○○(215)는 “신군부는 언론을 접수해 가는 전 과정에서 경향신문 기자들을 희생양 삼아 언론계가 북한과 연계 용공하고 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언론계 정화의 명분으로 삼았다.”고 주장하다.²¹⁶⁾

경향신문 해직기자 고○○(217)는 “5. 17. 남영동 대공분실로 연행되었다. 옥내집회 등을 주도하였기 때문에 포고령을 위반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조사를 받을 때는 김대중과의 연계 문제를 가지고 집요하게 추궁하였다. 김대중과 언론계가 어떻게 연계되었느냐가 조사의 초점이었다. 근거도 없이 무조건 김대중과 연계되었다면서 진술서 작성을 요구했다. 그러다 6. 9. 경향신문·문화방송 기자들이 구속되면서는 고려연방제를 왜 주장하였고, 어떻게 다른 기자들에게 전파하였는지에 대해 추궁하였다. 용공의 올가미를 씌우고 북한과 연계된 전령사로 규정을 내리고는 조사를 하였다. 그리고는 해직이 되었다.”고 주장하였다.²¹⁸⁾

이에 대해 보안사 언론대책반 수집관 이○○는 “반발기자 등의 제재는 일단 구두경고, 약점을 이야기하여 설득하거나, 간부 선을 통해 경고하는 것이다. 그래도 안 되면 해직까지 되는 것이었다.”면서, “대략 1980. 봄 무렵부터 언론인에 대한 동향(정보)을 수집하기 시작했다. 해직자 명단은 중앙정보부, 경찰, 보안사 자체조사, 그리고 우리도 모르는 제3의 곳에서 상부(지휘부)에 전달된 첩보(언론계 비리 등)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다. 이후보니까 내가 상부에 보고한 인원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해직자 명단에 추가되었던 것 같다. 주로 해직자는 제작거부나 비협조적인 기자 내지 부조리 기자들이었던 것으로 기억된다.”고 진술하였다.²¹⁹⁾

2) 제작거부 참여하였다는 사유로 해직

1980. 5. 26. 보안사가 작성한 「중앙 각 언론사 제작거부사태 분석 보고」에는 “신문 6개사, 방송 4개사, 통신 2개사에서 제작거부를 하고 있다. 소장층 기자와 학생시위 배후조정자 등과 사상적으로 연계되었고, 5.17조치를 부정적 요소로 판단 계엄해제를 요구하면서 5. 20.부터 검열 거부를 결의하였다.”고 적시하면서, “일벌백계로 의법 조치하고 문제 해소 시에도 준동 불순분자를 색출 재발 방지를 위해 다각적인 제재방안 강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80년 해직언론인협의회 고승우(신청인)는 “언론계에 대한 신군부의 탄압은 기자협회에 집중되었다. 신군부는 기협이 언론계 저항세력의 핵심임을 간파하고, 기자협회를 와해시키기 위해 무차별적인 공격을 하고 집행부를 검거하고 기자협회 각 지역 분회장 및 간부들을 모두 해직시켰다.”고 주장하였다.

한국기자협회 부회장 이○○(220) 강원도 지부장 유○○(221) 전라남도 지부장 윤○○(222) 충청남도 지부장 허○○(223) CBS 분회장 한○○(224) 대전일보 분회장 김○○(225) 전북 신문 분회장 김○○(226)은 기자협회 분회장 및 간부로 언론 자유실천운동을 전개했다는 이유로 전원 해직되었고, 무능과 부조리하였다는 일방적인 매도와 모멸감으로 심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다.

제주신문 해직기자 김○○(기자협회 제주지부장), 강○○(기자협회 제주신문지회장), 김○○(기자협회 제주지부 간사) 역시 1980. 5. 14. 기자협회에서 언론검열 반대선언이 있는 후 동년 5. 16. 제주도 내 ‘언론자유실천결의대회’에 참가한 일로 인해 해직되었다고 주장하였다.227)

이에 대해 보안사 언론대책반원으로 해직자 명단을 작성한 전○○는 “언론사에서 제작거부 등이 발생하였을 무렵에 그 동안 수집된 문제 언론인들의 명단을 자료로 한번 정리해 보라고 하기에 정리하여 100여 명을 이○○에게 보고한 적이 있다. 이후 1980. 9.경 취합해보니 700여 명이었다. 그러나 최종적인 결과는 내가 알지 못한다. 외근요원(수집관)이 제출한 명단보다 많은 수치였는데 외근요원들의 수집 자료는 주로 중앙언론사의 비협조적인 기자들이었다.”고 진술하였다.228)

언론대책반 수집관 손○○은 “기자협회나 분회 소속 기자들은 정권에 대해 저항기질이 상당했다. 날짜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데 어느 날 저항기질이 있는 기자들의 명단을 제출하라고 상부에서 지시하여 내가 가지고 있던 자료를 제출한 적이 있다. 기자협회 소속 기자들이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특별히 이들이 나빠서라기보다는 기자협회 소속 기자들이 저

항기질이 있었기 때문에 명단에 넣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229)

언론대책반 수집관 윤○○은 “당시 현 정부에 비협조적이거나 국시부정한 사람을 가려내라는 지시가 떨어졌는데, 실질적으로 파악하기 힘든 부분이었다. 그래서 경찰, 중앙정보부 정보를 주로 이용했다. 나는 당시 중앙정보부의 기록을 정리하여 보고한 바 있는데, 현 정부에 부정적인 기자들 그러니까 당시 언론자유운동하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각 부서마다 주동자를 중심으로 10여 명을 적어 제출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230)

언론대책반 수집관 김○○은 “정보보고서를 통해 몇몇 기자들이 정부 시책에 따르지 않는다는 보고를 한 일은 있다. 내가 올린 정보보고 뿐만 아니라 여러 경로를 통해 입수된 자료를 바탕으로 발췌하여 해직자 명단을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 수집관들이 2~3개월 간 활동한 업무로 상황을 모두 분석할 수는 없었다. 언론사를 오래 출입한 경찰이나 중앙정보부 요원들이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명단이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231)

별첨자료(3)

유신 전후 한국 언론과 정치, 자본권력과의 관계

〈작성자 : 고승우〉

19세기 말 독립신문 창간 이래 2021년 11월 현재까지 한국 언론의 정치 및 자본 권력과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독립신문 ; 1896년 4월 7일 창간 - 1899년 12월 4일 폐간까지 일본의 한반도 유린 작태 비판 전무한 것에 대해 일본 자금 지원설 의혹.

조선에 대한 열강의 침입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일본이 1894 7월 -1895년 4월 벌어진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뒤 1895년 10월 8일 새벽 일본의 자객들이 명성 황후 살해 뒤 6개월 후 이 신문이 창간됨. 당시 일본은 한국 강점을 목표로 한반도 동학군 포함 모든 주요 세력에게 자금 제공 등을 시도했음.

일제치하 동아, 조선 ; 일본의 치안유지법에 의해 독립운동을 반정부, 반사회적 행위로 규정한 일본 관헌의 나팔수 역할 + 일본의 일상적인 검열에 순응한 총독부 지배 체제에 제도언론으로 기여.

미군정하의 언론 ; 친일 언론 복간 속 진보 성향 및 사회주의 계열 신문 폐간 당하면서 해방정국의 지배세력이 된 친일세력의 주요한 부분으로 역할

이승만 정권 ; 국가보안법과 한미동맹으로 제한된 공간에서 순치된 언론행각 - 제2 4.3과 6.25 전후 민간학살이 미국과 이승만 정권에 의해 자행되었지만 보도 외면.

박정희 정권 ; 민족일보 조용수 사장 사법살인과 언론사 통폐합, 언론인 강제해직, 보도지침, 긴급조치는 물론 정부의 기자증 발급 등을 제도화해 18년간 언론을 권력의 나팔수로 이용.

전두환 정권 ; 내란 과정에서 언론인 불법해직, 언론사 통폐합 등 자행, 보도지침 강요하면서, 구조조정 된 언론사와 언론인에 당근 제공

노태우 정권 ; 87년 6월 항쟁과 함께 창간된 국민주 신문 한겨레 약화시키기 위해 신문시장 등록제로 개방, 다수의 신문 발행 속 대기업의 광고를 수단으로 언론 간접적 통제

이명박 정권 ; 지상파 방송사의 영향력 약화시키기 위해 종편채널 대거 허가 -> 방송시장의 경쟁 심화

박근혜 정권 ; 마이너 미디어 등장 봉쇄하기 위해 인터넷매체 등록 강화 시도하다 위헌 판정으로 좌절됨. 네이버, 다음 등 포털이 대중매체가 생산한 기사의 유통을 장악하면서 기존 매체에 가산점을 주는 반면 신생매체의 입점 조건을 강화해 신생 매체의 등장, 성장에 제약이 되고 있음.

2021년 11월 현재의 국내 대중매체

- 1) 국보법으로 사상과 표현의 자유 제약을 받으면서 진보, 보수를 자칭하는 기형적 형태
- 2) 한국의 국력 세계 10위 권, 군사력 6위권 속 기울어진 운동장인 한미동맹으로 국가 자주권 실종된 상황에서 남북교류협력, 긴장완화 노력이 외세의 제약으로 저지된 상황에 대해 침묵.
- 3) 대중매체는 포털과 플랫폼 등 거대 자본에 정보 유통부분을 장악 당해 조회 수에 매달리는 형국(연합뉴스, 광고형 기사 논란) - 대중매체에 대해 정치권력 대신 자본의 지배가 심화되는 상황 속 언론매체는 각자 도생 몸부림(외국 언론 NYT, 가디언 등 독자 기부로 자생력 확보).
- 4) 기레기 언론으로 지탄받으면서 언론계는 조중동, 한경 체제로 이분화 된 상태로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에 필요한 언론계 전체의 자율규제 외면 - 정치권의 언론중재법 제정 시도
에 전 언론계 반발 속 자율규제 노력 시작
- 5) 대중매체 가짜뉴스 홍수 속 21대 대선 보도, 일부 독설가 발언 검증 없이 중계방송 / 방송사 시사토론 정당인 출연 일반화되어 사회적 확증 편향 심화 부작용 방조(트럼프 등장 전후 미국 주요 언론 대선 보도는 팩트 체크 필수)

김 동 현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부위원장)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는 필리핀의 마리아 레사와 러시아의 드미트리 무라토프라는 두 언론인이었습니다. 독재정권에 저항한 용감한 기자라는 것이 수상이유였습니다.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는 현재의 필리핀이나 러시아에 비해 훨씬 엄혹한 유신군부독재정권에 맞서서 온몸으로 치열하게 언론자유투쟁을 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김서중 교수의 발제문에도 소개되고 있습니다만 당시의 엄혹한 군사독재시절 언론환경을 오늘날은 상상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이를테면, 월간잡지 신동아(1968년 10월호)가 북한 공산주의에 대한 미국 논문을 게재하면서 communist guerrilla leader로 표기된 김일성을 ‘빨치산운동 지도자’로 번역했다고 해서 홍승면 주간과 손세일부장이 구속되고 담당자들이 많은 곤욕을 겪었습니다.

신동아는 다음호에 중앙정보부가 일러준대로 김일성을 ‘공비두목’이라는 표현의 정정 기사를 크게 실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차관에 관한 특집기사 중 차관의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갔던 공공연한 사실을 문제삼아 중앙정보부가 취재기자와 편집기자를 반공법위반 혐의로 연행하는가 하면 동아일보 발행인을 교체시키기도 했습니다.

1974년 10.24 자유언론실천선언은 편집국에 상주하면서 모든 기사를 검열간섭하던 기관원을 내쫓고 정상적인 자유언론을 실천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듬해 3월 17일 자유언론운동에 앞장선 기자 프로듀서 아나운서 등 113명은 동아일보서 쫓겨나고 대신 기관원은 다시 신문사에 상주하기 시작했습니다.

펜과 마이크를 빼앗긴 우리들은 1977년 10월부터 1년 간 제도언론이 보도하지 않는 125개 사건들을 취재하여 철판로 직접 글씨를 써서 등사판으로 밀어서 만든 ‘보도되지 않은 민주인권 사건일지’를 특집으로 제작하여 10.24 자유언론실천 4주년 기념식장에서 배포했는데, 이것이 이른바 민권일지사건으로 10명이 투옥되었습니다.

1975년 3월17일 새벽 폭력배에 의해 거리로 쫓겨나면서 창립된 동아투위는 지난 47년 동안 국가와 정치권, 동아일보를 향해 명예회복과 복직, 민사배상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그동안 유일한 성과라면 노무현 정부 때 출범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동아투위의 진상규명 신청에 대해 2008년 10월 29일 다음과 같은 요지의 결정문을 보내온 것입니다.

- 정보부와 문공부 등 당국이 자유언론실천을 주장하는 기자들을 해임하도록 동아일보에 압력을 가했고 복직도 막았으며 재취업마저 방해했다. 전대미문의 동아 광고 탄압과 언론인 대량해임은 유신정권의 언론탄압정책에 따라 자행된,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국가는 동아일보와 해직언론인에게 사과하고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피해회복을 통해 화해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한 동아일보도 해직언론인들에게 사과하고 피해와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적절한 화해조치를 취하라고 권고 했습니다.

동아투위는 진실화해위의 결정을 바탕으로 2009년 12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만 1심과 항소심 모두 “국가 공권력에 의한 해직은 인정하나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원고패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정권까지는 소멸시효가 중지된다고 볼 수 있지만 김영삼 정부이후는 시효장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는 요지였습니다. 2012년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그동안 생활지원금을 받은 사람과 진실화해위에 진실규명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제외하고 13명에 대해서만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과 2심은 1억원의 배상소송을 했다가 상고심은 상징적 의미인 1천만원으로 낮추었기에 실질적 배상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무엇보다도 동아언론탄압 사건이 박정희 정권시절 일어난 일이고 당시 재판은 박근혜 정부시절이었으므로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이 작용한 것이 아닌가하는 합리적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국가공권력이 국민에게 잘못을 저지르고서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모른 채하는 나라가 진정한 국가인지 묻고 싶습니다.

조선시대 왕에게 바른말을 하는 언관이 오늘의 언론인이므로 을묘년인 1975년 대량해직은 을묘사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아투위는 우리나라의 언론자유와 민주화를 위해 투쟁한 언론의병인 것입니다. 조선시대 가장 대표적인 필화사건인 무오사화 때 부관참시까지 당한 김종직은 15년만에 복권이 되었는데 우리는 47년째 거리에 방황하고 있으며 그 중 34분이 이미 유명을 달리했고 우리의 평균 나이도 80세에 이르렀습니다.

“진실의 기차는 언제나 연착한다. 그러나 반드시 도착한다”는 말이 있지만, 우리가 기다리는 진실의 기차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언론자유를 위해 투쟁하다 정부와 동아일보의 야합으로 강제해직된 우리들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보상은 반세기가 되도록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영화 ‘카사블랑카’에서 레지스탕스 지도자 라즐로에게 “왜 그렇게 위험한 일을 하느냐?”고 친구가 묻자 “나라 잃은 국민이 광복투쟁하는 것은 숨쉬는 것과 같은데, 숨을 쉬지 마란 말이냐”고 대꾸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기자에게 자유언론투쟁은 숨쉬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류역사상 자유, 정의, 진리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매우 고귀하지만 항상 소수였고, 또한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유신헌법 일부조항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을 때 양승삼 변호사는 “그 어려웠던 군부독재와 유신시절에 용기를 내서 정의를 외치고, 이 때문에 불이익을 당한 분들을 현창해야 앞으로 정의가 살아 숨쉬게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대중대통령은 그의 자서전에서 “정부는 동아의 광고탄압을 풀고, 회사는 비판적인 기자들을 내쫓음으로써 추악한 뒷거래를 했다. 비록 직장을 잃었지만 이들 해직기자들은 우리 민주주의를 위해 많은 일을 했다. 나는 그들의 용기와 정의감을 지금도 경이롭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희호여사도 자서전 <동행>에서 “동아일보 해직자들이 만든 동아투위와 같은 저항이 없었다면 우리 언론은 얼마나 부끄러울까. 일제에 항거한 3.1독립만세운동으로 부끄럽지 않은 민족이 되었듯이 불의에 대한 공분과 저항은 자존의 증거이며 행동하지 않은 양심은 악이다”라고 했습니다.

언론자유는 모든 자유를 자유롭게 하는 자유입니다. 금년도 노벨평화상 위원회는 수상식장에서 “언론자유가 없으면 국가 간 우애나 군비축소, 더 나은 세계질서도 없다”고 했습니다. 동아투위는 언론자유 뿐만 아니라 이 나라 민주화를 위한 투쟁도 병행해왔습니다.

기독교에서도 잘못에 대한 진정한 사과는 3R, 즉 Repentance(회개) Restitution(보상) Reformation(개혁)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못을 저지른 국가가 결자해지의 자세로 진정한 사과와 명예회복 및 적절한 피해배상을 하루속히 해주기를 바랍니다.

김 준 범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공동대표, 당시 TBC 기자)

■ 유신시대의 언론통제

- 관련법 제정후 의법조치, 당근과 채찍으로 정권에의 순치를 제도화.
- 비판기능 보다는 언론도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며 기업화 유도
- 1986년 <월간 말>지가 폭로한 보도지침(1985.10~1986.8)보다 10년 전 유신시대 때도 존재(1975.5.16~1979. 12.11). * 동양방송(TBC) 보도국에서 기록, 보관

<보도지침>

- TV매체라 지침도 신문과 달라 ▲hold(보류)가 최다. 그중에도 ▲일체/부분/시한부/모두홀드 등 세분. “동아일보 이부영 공판 최후진술-1975.12.29.”도 포함
- ▲삭제도 부분/전면삭제 ▲전재/보도/사진/취급불가 ▲보도/논평금지 ▲일체금지 ▲특정인 부각금지 ▲스케치 금지 ▲축소보도 ▲방영불가 ▲현혹말 것(DJ석방설) 등 세세한 부분까지 지침을 하달.
- 정치인중 김대중 관련 지침이 최다. 국장석에선 야근자에게 “학원/체제/종교/군경 관련 기사는 국장에게 연락”하라告知.
- 긴급조치 위반자 석방/민주전선 편집국장 연행/한신대 휴교 등은 ▲취급불가, 독도 보도는 ▲삼가
- pp국립묘지 참배/pp의 경력중 ‘일본육사 졸업’은 삭제/김대중 납치는 KCIA소행/이후락 지하철 건설사 1억 뇌물수수 등은 hold. 심지어 “일본우익단체, DMZ서 군사 훈련”도 ▲보도금지

〈언론사 기관원출입〉

- 1963년 제5대 대선(10.15)에서 윤보선 후보에 초박빙(1.5% 차이) 당선된 이후 김종필의 중정이 요원들을 주요 언론사에 배치, 출입케 함.
- 1965년 한일협정 체결을 앞두고 중정이 치밀한 언론통제 필요성 대두
- 민/관 모든 기관에 중정/경찰요원 파견, 내부 상황 일일보고 체계 갖춰
- 1979.10.26. 당시 계엄령 발포 때는 보안사 요원들이 언론사 출입

〈5공의 언론통제와 연행사례〉

- 전두환의 ‘홍보일원화’ 지시에 따라 문공부내에 홍보조정실 만들어 以言制言 전략 구사. 조성천(연합) 초대실장, 이유식(동아), 이정배(한국). 그 밑에 각 언론사 담당관으로 정기정 서병호 이병서 김기철 강형석 엄광석 등 배정.
- 컬러 TV방송 시작/전두환은 자신의 이미지 메이킹에 TV를 적극 활용
- 청와대에 방송담당 비서관 신설, 김기도(전mbc정치부장)
- KBS 이원홍, MBC 이진희 등 충성경쟁으로 임기내내 ‘땡전 뉴스’ 유지

▲한수산 연재소설 관련, 중앙일보 손기상 문화부장/정규웅 편집위원/권영빈 출판부장 /이근성 출판기자=1981.7.29.

▲북한의 3자회담 제의 기사 관련, 동아 이도성/한국 노진환 정치부기자=1984.1.7.

▲학원안정법 보도관련, 경향 손광식 편집국장/강진구 사회부장/정치부의 홍성만 부장 /이실 차장/김지영 기자 등=1985. 7.25

▲“한국내 美CIA”기사로 월간조선 조갑제 기자=1986. 2

■ 해직 언론인 취업제한

- 일방적인 해직 과정. 사표제출 강요. 12×12 크기의 사표용지에 본인 이름만 적어 넣으면 될 수 있도록 내용이 구성.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 며칠후 담당 부장이 불러 개인면담 하며 해직사실 통보. “언행 조심” 당부
- 사표제출 거부자도 해직에 포함. 그 후 소송했으나 패소.
- 해직자 분류=A<B<C. 국시부정, 극렬 반정부(검열 및 제작거부 포함)
- 특정 정치인 추종 및 유착자, 부조리 행위자, 파렴치 행위및 범법자
- 취업제한 대상=6개월, 1년, 영구제한/TBC 소속 2인(김준범 한종범)의 경우

▲金=처음부터 삼성이나 다른 대기업은 불가판정. 모 건설회사 지원, 서류 합격이나
면접과정에서 탈락. 나중에 ‘해직기자’ 사실 밝혀져. 전과자 취급

- 11대 국회의원과 비서관 채용 구두 합의, 나중에 不可 판정. 공보비서로
- 4급 비서관은 정규직으로 국비 지원, 공보비서는 비정규직/의원 개인 지급
- 5년차에 대학 강사로 전직. 그후 제일기획-88.3 중앙일보 복직
- 중앙일보에서는 연봉이나 승진 등 인사상의 불이익, 차별 全無

▲韓=처음 삼성측과 얘기 잘 되다가 얼마 후 “안 되겠다”며 난색.

특권세력화된 언론이 대표적 유신적폐

송 병 춘

(변호사, 유신청산민주연대 법률기획위원장)

언론이 국민을 대신하여, 좋게 말하면 정치적 여론을 선도하는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여론을 조작하여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정당이 취약하기 때문이지만, 독과점화된 언론의 특권적 지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정치’란,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형성·수렴하여 국가 정책을 수립하고 관료들로 하여금 그 정책을 집행하도록 하는 작용을 말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는 그 ‘정치’를 정당이 아니라 언론이 대신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잠시 토론 주제를 비껴가는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나라 정당은 민주적인 정당이 아니고, 당원이 주인인 정당도 아닙니다. 인맥관계로 형성된 소 영주들이 지배하는 정당이고, 정당의 정강정책을 수립하거나 공직 후보자들을 선출하는 데 당원들이 철저히 배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당은 이렇게 폐쇄적이어서 스스로 정치 지도자를 키워내지 못합니다. 소 영주들이 사적인 인맥을 통하거나 시민사회의 저명인사를 스카우트하여 공직 후보자들을 선발하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이런 정당에서는 유능한 정치인이 성장하기 어렵고, 유능한 정치인이 없으므로 국가 정책을 수립한다든가 관료들을 장악하여 그 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만들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리하여, 정치인이 정책 수립이나 그 집행 과정에서 직업관료들에게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본 주제로 돌아와서, 언론의 특권적 지위가 대표적 유신적폐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재벌언론은 독재정권의 강권적 언론구조조정 내지 언론통폐합 조치에 따라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에서나 언론이 독과점화되고 거대 언론재벌이 탄생하는

것은 필연적인 현상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이 과정이 독재정권의 적극적인 개입 하에 이루어졌고,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면서 언론을 독재정권의 하수인으로 만드는 과정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 언론은 권력과의 야합을 마다하지 않을 만큼 권력지향적이고, 정치적 편향성과 曲筆阿世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물윤리적 태도가 고착되었던 것입니다.

발제자들께서 우리나라 언론사의 기업화와 재벌언론사의 등장이 거의 전적으로 독재정권의 주도 하에 언론사들을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탄생하였음을 잘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언론사 사주들이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는 독재정권의 요구를 철저히 수용하여 기자들과 대립하였다는 점도 지적하셨습니다. (동아투위, 조선투위의 자유언론실천운동, 80년의 언론자유운동과 5.17 이후의 언론통폐합, 해직 사태)

그런데, 언론사의 재벌기업화를 문제로 지적하는 만큼, 언론인들이 특권세력화되어 기 특권세력과 야합하고 국민 여론을 호도하게 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2020. 11. 경 법조기자단 해체를 청원하는 국민청원운동이 벌어졌던 사실을 여러분도 잘 아실 텐데, 2020. 3. 경 채널A 이동재 기재와 윤석열 측근 한동훈 검사장의 유착 의혹이 드러났던 게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 2021. 11. 24.에는 서울행정법원이 서울고법에 대하여, “미디어오늘 출입 거부 처분 취소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언론인의 특권세력화는 유신 독재정권이 1972년 ‘프레스카드’(특정 행사를 취재하도록 행사 주최 측이 발행하는 출입증)를 마치 기자등록증처럼 발급하여 무시로 관청에 출입하는 특권을 준 것에서 비롯됩니다(예 : 법조기자단).

저는 재벌언론사를 규제하는 것보다 언론인의 특권을 해체하는 것이 언론개혁의 요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특권의 물적 토대가 바로 관청 출입증 제도와 기자실입니다.

‘그들만의 리그’ 대한민국 법조출입기자단

- 2019.10.18 19:35:20

정부 부처 출입기자단 가입 절차는 대개 비슷하지만 유독 법조출입기자단의 벽이 높다. 검찰발 정보를 캐는 게 법조출입기자의 ‘실력’으로 인정받는 상황에서 검찰과 관계에서 조금이라도 가까이 갈 출입기자단은 유혹이 클 수밖에 없다.

법조 기자실 출입 및 기자단 가입 규칙을 보면 ‘기자실에 출입하기 위한 조건’은 “6개월 동안 법원, 지검, 대검 담당 등 최소 3명의 인력으로 법조팀을 운영하면서 법조 관련 기사를 보도해야 한다” “이 기간 동안에는 기자실에 들어오지 못하고 기자단을 통한 자료 제공은 일체 없다”고 돼 있다.

6개월 동안 법조 관련 기사를 썼다고 인정받으면 기자단에 가입 투표 회부를 요청할 수 있다. 기자단 규칙엔 “법원, 지검, 대검 기자단에서 각각 투표를 실시하고, 재적 3분의 2 출석과 과반수 찬성이 이뤄지면 기자실 출입을 허용한다. 이에 대법원 1진 기자실에서 한차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규칙상 3개의 기자실에서 시행하는 투표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관행적으로 법조팀 검찰반장이 상주해있는 지검(고검) 기자단 투표를 통과하면 기자실 출입을 허락해왔다. 지검 기자단 소속 일원의 3분의 2 출석에 과반을 얻어 투표를 통과하고 대법원 기자단(1진)이 승인하는 식이었다. 2014년 이전 이런 방식을 통해 기자실을 출입하고 있는 매체는 이데일리과 이투데이 등이다. 그런데 2014년 이후엔 투표 통과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 단 한 매체도 기자실 출입을 못하고 있다.

A매체는 2017년 12월 그리고 올해 6월 두 차례 기자실 출입 투표 결과 부결됐다. B매체도 올해 6월 투표에서 떨어졌다.

2017년 A매체는 지검(고검) 기자단과 지법(법원) 기자단 2곳 가입 투표를 신청했는데 지검 기자단 투표에선 부결되고, 지법 기자단 투표는 통과했다. 최종 승인 권한을 갖는 대법원 기자단(1진)은 하지만 기자실 출입을 허락하지 않았다.

결국 A매체는 올해 6월 3개 기자단 가입 투표를 했지만 모두 부결됐다. 타 정부 부처 역시 기자단 투표를 실시하고 있지만 법조출입기자단과 같이 요건이 엄격하고 자의적으로 운영되는 곳은 많지 않다. 법조출입기자단이 일종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폐쇄된 상태에서 검찰발 정보를 독점하려 하기 때문에 ‘검언유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으로 보면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17년 박근혜-최순실 농단 사건이 터지고 특검이 꾸려지자 15개 매체 40여명 기자들은 별도의 기자단을 만들었다. 이들은 법조출입기자단과 차별 없이 특검팀에서 나온 정보나 재판 정보를 받는 데 목적을 뒀다. 하지만 차별은 여실히 드러났다.

법원은 대법정에서 진행되는 국정농단 사건을 취재할 자리 40여개 모두를 법조출입기자단에 줬다. 기자단에 속하지 않은 매체는 재판을 볼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 ‘비출입 기자단’은 법원에 ‘음소해’ 겨우 한자리를 얻어 재판에 들어갔다. 소법정(참관 30명 제한)에서 진행되는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선 법조출입기자단 몫으로만 3개 자리를 줬다. 법원은 재판정에서 금지돼 있는 노트북 사용을 허락했다. 기자단에 속하지 못한 매체 기자들은 법정에서 재판 과정을 수기로 기록해야 했다.

공판중심주의 취재는 재판을 기록하고 판결문을 분석하는 일이다. 그런데 법원은 판결문 공개에 제한적이다. 판결문 공개에 따른 명예훼손 소송 문제가 불거진 탓도 있지만 법조출입기자단이 기득권을 고수해서다. 법조출입기자단에 속한 매체의 경우 판결문이 나오면 법원에 신청해 즉시 전자문서나 출력된 종이 형태로 받아볼 수 있다. 하지만 기자단에 속하지 않으면 판결문 구하기가 쉽지 않다. 판결문을 신청하면 수일이 걸린다. C기자는 “판결문을 신청했더니 법원 공보관이 출입기자단에서 비출입사 기자에게 판결문을 주지 말라고 했다고 그러더라”라며 “피의사실공표 문제가 있는 검찰 중심 취재가 아니라 재판 과정을 따라가는

취재를 하려고 해도 이슈가 큰 사건의 경우 차별을 받는다. 기자단 시스템이 개선되지 않으면 공판중심주의 취재라는 말도 헛구호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미디어비평] 출입기자실, 뉴스권력의 특권인가?

이준희 기자 입력 2021.11.24

법조기자단 특권에 법원 철회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법, 미디어오늘 출입 거부 처분 취소하라” 선고

[뉴스엔뷰] 특권을 행사하고 있는 출입기자실에 법원이 철퇴를 내렸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의 배타적, 특권적 출입기자실 출입 금지에 맞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던 ‘미디어오늘’이 승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서울고등법원이 법원 기자실 출입 허용 여부에 대해서 자체 판단하지 않고 출입기자단에 이 문제를 판단하도록 발뺌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항소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지난 11월 19일 매체비평 전문지 ‘미디어오늘’이 올해 3월 서울고등법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출입증 발급 등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서울고법이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미디어오늘’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출입기자실의 특권, 배타적 행태를 타파하기 위한 행동입니다.

‘미디어오늘’은 미디어비평 전문지에서 머물지 않고, 실제 뉴스권력 해체를 위한 실질적인 행동에 돌입하여 획기적인 판결을 받아낸 것입니다.

이 매체는 이번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이 서울법원 종합청사 출입기자단에게 기자실 사용 허가 및 출입증 발급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것이 전혀 법적 근거가 없으며, △재량권 일탈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변론했습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의 청사관리관인 서울고법이 스스로 재량권을 행사해 결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소송에 앞서 ‘미디어오늘’과 탐사매체인 ‘뉴스타파’, ‘셜록’이 작년 12월 서울고등법원과 서울고등검찰청을 상대로 출입기자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매체들은 법조 출입을 위하여 두 기관을 상대로 출입기자 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이에 서울고등법원과 서울고등검찰청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이들 매체에 대한 출입을 허가하지 않은 것과 관련 당시 서울고등법원은 “출입기자단 가입 여부와 구성은 기자단 자율에 맡기고 법원은 관여하지 않는다.”며 “출입기자단 가입은 기자단 간사에게 문의해 달라.”고 출입거부를 통보했습니다.

자신들은 출입기자단 가입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이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서울고등법원 출입기자실은 법원 3층에 있는데요. 법원이 관리하는 것입니다.

민간 회사인 뉴스매체들로 구성된 기자단이 출입기자실을 관리, 통제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간 이를 암묵적으로 묵인해 온 거죠. 이는 명백히 잘못된 것입니다.

현재 ‘뉴스타파’, ‘셜록’이 서울고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현재 12월에 3번째 재판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출입 허용 여부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의 요청을 받는다.”고 회신해 ‘뉴스타파’, ‘셜록’ 측이 서울고검이 자신들에 대해서 출입 허용을 거부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한 ‘뉴스타파’, ‘셜록’, ‘미디어오늘’은 서울고등법원과 서울고등검찰청을 상대로 출입 기자 신청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하여 “언론 자유와 평등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심판도 청구해 놓고 있어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서울행정법원의 서울고등법원의 ‘미디어오늘’ 출입 불허 패소 판결과 ‘뉴스타파’, ‘셜록’의 서울고검 상대로 출입 거부에 관한 소송,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 결과와 진행 중인 소송은 배타적, 특권적 출입기자실 개혁을 위한 중대한 분수령이라 할 수 있어서입니다.

뉴스권력의 특권 카르텔의 정점이 바로 출입기자실입니다. 현재 출입기자실은 청와대, 각 정부부처, 공공기관, 지자체에 만연해 있습니다.

관청 출입증과 기자실이 왜 필요한가?

현재의 기자실은 단순히 기사를 작성하고, 송고하기 위한 시설이 아닐뿐더러, 이제는 모바일로 모든 것이 해결되기 때문에 기사 작성이나 송고를 위한 시설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모든 정보는 관청과 관료들에게서 나옵니다. 장관이나 정치인들이 움직이는 일거수 일투족이 관료들을 통해 기자들에게 제공됩니다. 이해관계 집단들에게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 있는 모든 정책 정보가 관료들을 통해 기자들에게 제공됩니다. 관청 기자실은 지금 재벌언론사 1진 기자들이 꾸미는 정치 조작과 이권 개입의 ‘아지트’로 전락하였습니다.

법조기자단 해체를 청원하는 국민청원운동은 일면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관권을 동원하여 기자단을 해체할 수 없을 뿐더러, 기자단 해체를 운운하는 것 자체가 언론자유를 탄압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자실은 다릅니다. 브리핑룸은 여전히 필요하겠지만, 더 이상 특정 기자들에게 출입증을 교부하고 사무실까지 제공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리하여 사무실과 출입증 제도를 폐지하면 기자단의 특권적 지위도 해체되기 마련입니다.

| 토론 |

구 영 식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기자협회 부회장)

유신청산민주연대 규약(안)

1. 명칭 : 유신독재청산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연대기구로서 약칭하여 유신청산민주연대라 한다.
2. 목적 : 본회는 유신독재시기인 1971-1980년 사이 불법적 국회해산, 자유민주주의를 말살한 유신헌법 불법제정,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유린, 긴급조치 발동 등 민주주의 파괴를 자행한 각종 불법과 국가폭력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 저항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유엔 인권이사회가 제시한 '전환기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회원 : 본회의 목적과 취지에 동의하는 단체와 개인을 회원으로 한다. 참가단체는 5인 내의 대의원을 통해 회원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가입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이루어진다.
4. 총회 : 본회에 참여한 단체와 개인을 회원으로 하는 정기총회는 년 1회 개최하며 대표단과 운영위원회를 선출하고 2인의 감사를 선출한다. 총회는 대표자회의로 대신할 수 있다.
5. 대표 : 본회는 참여단체와 개인으로 10명내외의 공동대표를 구성하며 3인 이내의 상임대표를 둘 수 있다. 대표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6. 운영위원회 : 참가단체의 임원 15인 내외로 구성하며 본회의 일상적인 사업과 활동을 관장한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1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3인 이내의 부위원장과 회계 및 서기를 선출한다.
7. 고문과 자문위원 : 덕망과 학식을 갖춘 인사를 본회의 고문과 자문위원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한다.
8. 위원회와 사업단 : 본 회의 사업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각종 위원회 또는 사업단위를 구성할 수 있다.
9. 사무국 : 회원단체중 실무역량이 있는 단체를 중심으로 공동사무국을 구성하며 그 중 책임사무국을 선정할 수 있다. 책임사무국은 당연직 운영위원이 된다.
10. 재정 : 본회의 재정은 참가단체의 분담금과 회비 후원금 사업수입으로 한다.

부칙

1. 규약외의 사항은 민주적인 관례에 따른다.
2. 본 규약은 통과되는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20년 5월 28일

유신독재 타도 투쟁에 동참한 민주시민 여러분께 드립니다

10·26 궁정동의 충격으로 박정희의 유신정권이 끝난지 40년이 지났습니다. 6월 시민 항쟁,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촛불혁명을 거치며 민주주의는 전진해 왔습니다. 인권, 평화, 안전,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시민적 권리도 확립되고 있습니다. 특히 촛불정부는 이명박, 박근혜 수구정권의 적폐를 과감히 청산하고 있으며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실현하기 위해 진력하고 있습니다. 민주시민 여러분이 바라던 모두 같이 잘사는 대동 세상이 실현될 날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왜곡된 역사의식을 가진 일부 수구 부패 세력은 화합이라는 미명 하에 유신 군사독재의 잔재를 묵인하고 넘어가려는 망동을 여전히 벌이고 있습니다.

진정한 민주사회를 이룩하려면 개인의 인권과 민주적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군사독재 시절의 과거사를 청산하려면 법과 제도의 개혁에 그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 주고 실질적인 원상회복을 지원하는 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미 국민의 정부 시대부터 각종 진상조사위원회가 설치되어 활동했으며 재심과 보상, 배상 절차가 부분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시절에도 피해자가 민원인의 입장에서 국가를 상대로 각종 구제를 신청하고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는 절차를 밟아야 했습니다. 국가의 각종 정보수사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자료도 공개하지 않아 개인적으로 각종 증거를 찾아 제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박근혜 정권의 양승태 대법원장이 저지른 사법농단으로 긴급조치 9호는 위헌이지만 체포 심문, 구금한 수사기관은 적법한 공무를 수행했다는 대법원 판례(2015.3 3부 권순일)가 확립되었습니다. 중앙정보부, 경찰을 비롯한 공권력이 명백하게 개입한 많은 노동사건은 노사 간의 민사사건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심지어 국정원은 인혁당 사법살인 피해자 유족들에게 소송을 걸어 배상금을 강제 환수하고 있습니다. 촛불 혁명 이후에 취임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끄는 사법부는 사법농단으로 이중피해를 입은 유신 독재 피해자들의 거듭된 호소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유엔인권이사회가 2012년에 채택한 결의안을 보아도 권위주의적 통치가 종식된 지역에서 민주적 질서를 확립하려면 ‘전환기적 정의’를 실현해야 하며, 이를 위해 ‘진실 규명, 사법적 정의 확립, 보상과 배상, 재발 방지 대책이 포함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이 결의안은 가이드라인의 신속한 이행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는 진정한 해원과 배상은 유신 잔재의 말끔한 청산입니다. 2019년 해 10월 부마민주항쟁 40주년 기념사에서 문재인대통령은 ‘유신독재의 가혹한 폭력으로 인권을 유린당한 피해자들 모두에게 대통령으로서 깊은 위로와 사과’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정부,

사법부, 입법부, 어느 곳도 “유신헌법 원천 무효”를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유신 정권 시절의 과거사 청산이 지체되는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유신 독재의 총견이었던 전두환 노태우 신군부일당이 12.12군사반란으로 국민의 민주 헌정 회복 요구를 짓밟고 1980년 서울의 봄과 광주 민주항쟁을 무자비하게 진압하였습니다. 광주 학살의 주범인 전두환이 스스로 대통령이 된 채육관 선거의 근거는 유신헌법이라는 사실을 상기해야 합니다.

우리는 6월에 출범하는 21대 국회가 유신헌법 원천 무효를 선언하여 유신 잔재를 철저히 청산하는 출발점을 마련하도록 강력하게 촉구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정부, 대법원, 헌재도 불법 정권인 유신 체제가 자행한 인권유린 사태를 청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실천에 나설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유신독재 타도 운동을 함께 했던 민주시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모두 한 자리에 모여 작은 차이를 넘어 연대의 정신으로 함께 다음의 과업을 실현해 나갑시다.

우리의 과제와 요구

- 1) 정부, 국회, 대법원, 헌재는 “유신헌법”의 원천 무효를 유신 정권의 불법성을 선언하라.
- 2) 소멸시효 단축으로 각하된 국가배상 민사소송을 즉각 재개하라.
- 3)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과 보상에 관한 법률(민보상법)에 의한 생활보조금 수급자가 제기한 국가배상 민사소송을 즉각 재개하라.
- 4) 대법원은 “긴급조치 9호는 위헌이지만 공무원의 직무 수행은 적법하므로 국가의 배상 책임은 없다”는 궤변 판결을 즉각 취소하고, 국가배상 민사소송을 재개하라.
- 5) 유신 독재에 항거한 국가 폭력의 피해자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국가배상을 실시할 수 있는 가칭)유신청산특별법을 제정하라.
- 6) 통과된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기본법(과거사법)에 따라 과거사 진상 규명 위원회를 즉시 재가동하고 인권 침해와 민주주의 파괴를 총체적으로 규명하라.
- 7) 인혁당 사건 피해자에 대한 ‘기지급 배상금 환수’를 즉각 중지하고 원상회복하라.
- 8) 민보상법의 ‘관련자’를 ‘유공자’로 변경하고 정당한 예우를 실시하라.
- 9) 언론자유실천 투쟁으로 해직된 언론인에게 국가는 사과하고 명예회복과 보상을 실시하라.

2020년 5월 28일

(가)유신청산민주연대 참가자 일동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 / 민주·인권·평화를 실천하는 긴급조치사람들 /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 자유언론실천재단-동아자유언론실천투쟁위 / 전태일재단 /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 한국작가회의 / 4.9통일평화재단 / 70민주노동자회-청계 통일 원풍 YH노동조합외 / 71동지회 / NCKK인권센터)

* 참가는 단체와 개인 모두 가능하며 규약과 적절한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유신청산민주연대 임원진(2021년 10월 현재)

• 참여단체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상임대표 박현옥)
긴급조치사람들(이사장 유영표)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이사장 문정수)
서울민족예총친총연합회(이사장
자유언론실천재단(이사장 이부영)-동아투위 조선투위 80해직언론인협의회
전태일재단(이사장 이수호)
촛불계승연대(상임대표 송운학)
한국작가회의(이사장 이상국)
4.9통일평화재단(이사장 문규현)
70민주노동자회(회장 임현재) - 청계 동일 원풍 YH 노동조합외
71동지회(회장 김재홍)
NCKK인권센터(이사장 홍인식)

• 고 문

김경천 전 국회의원
박중기 49통일평화재단 이사
배기운 전 국회의원. 71동지회 부회장
이부영 전 국회의원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이해학 거래살림공동체 이사장
임진택 예술인

• 공동대표

김재홍 상임 / 71동지회 고문
고은광순 긴급조치사람들 부회장
박현옥 상임 /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 상임대표
박순희 70민주노동운동동지회 부회장
성한표 조선투위 위원장
송운학 촛불계승연대 상임대표
신현수 한국작가회의 사무총장
안승운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이사장
허 욱 동아투위 위원장

• **운영위원회**

이대수 위원장 / 긴급조치사람들 이사
김선희 촛불계승연대 집행위원장
김종기 부위원장 /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상임이사
박강호 자유언론실천재단 상임이사
송경동 한국작가회의 자유실천위원장
이창훈 4.9통일평화재단 자료실장
임현재 부위원장 / 70민주노동자회 회장
조봉훈 부위원장 /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 고문
조재현 서울민예총 기획실장
조종주 강제징집녹화선도공작진실규명추진위 사무처장
김종채 유신청산민주연대 역사.자료정리위원장
송병춘 유신청산민주연대 법률기획위원장

• **공동사무국**

이대수 박강호 이창훈 임현재 조재현 조종주

• **사무실**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353. 엔씨오피스텔 1102호
홈페이지 : www.ycdn.or.kr
e-mail : ycdn21@naver.com

